경상북도

도보
www.gb.go.kr

선람	기관(부서)의 장

제6500호 2021년 1월 4일(월)

경 상 북 도

■ 조 례

○ 경상북도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441호) …… 9

회람								

발행인:경상북도지사 편집:대변인실

○ 경상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442호) …… 13

○ 경상북도물류정책위원회설치 ·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443호) …… 16

○ 경상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444호) …… 19

○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445호) …… 23

○ 경상북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446호) …… 26

○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447호) …… 30

○ 경상북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448호) …… 35

○ 경상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449호) …… 37

○ 경상북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450호) …… 40

○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 ·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451호)…… 43

○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452호) …… 45

○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453호) …… 47

○ 경상북도 소규모어항 지원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454호) …… 52

○ 경상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455호) …… 54

○ 경상북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456호) …… 59

○ 경상북도 농산물 정보기반 생산 및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457호) …… 65

○ 경상북도 해녀문화 전승 · 보존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458호) …… 68

○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459호) …… 71

○ 경상북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460호) …… 75

○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461호) …… 79

○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462호) …… 81

○ 경상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463호) …… 83

○ 경상북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464호) …… 86

○ 경상북도교육청 평화 ·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465호) …… 92

○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466호) …… 95

■ 고 시

○ 거두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1-1호) …… 101

○ 이전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1-2호) …… 107

○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 등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1-3호) …… 112

○ 2021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1-4호) …… 127

○ 청송 주산지테마파크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 시행자 지정 ·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1-5호) …… 128

○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등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1-6호) …… 149

■ 공 고

○ 도로공사 시행허가(변경) 내용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1-2호) …… 154

○ 경상북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운영계획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1-4호) …… 155

○ 측량업 등록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1-5호) …… 158

시 군

■ 고 시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중로1류 8호선(일부구간))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안)
(경주시 고시 제2021-1호) …… 160

○ 안동 도시계획시설(공원:정상택지2공원)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안동시 고시 제2021-3호) …… 174

○ 구미 도시계획시설(공원:꽃동산공원)사업 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구미시 고시 제2021-1호) …… 177

○ 영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영천시 고시 제2021-2호) …… 206

○ 영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영천시 고시 제2021-3호) …… 208

○ 의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의성군 고시 제2021-2호) …… 210

○ 의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의성군 고시 제2021-3호) …… 212

■ 공 고

○ 공인 등록 및 폐인 공고(구미시 공고 제2021-5호) …… 219

기 타

■ 고 시

○ 하천점용허가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653호) …… 231

○ 하천점용허가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654호) …… 232

○ 하천점용(일시)허가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655호) …… 233

○ 하천점용(일시)허가 기간연장 고시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656호) …… 234

○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661호) …… 235

○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662호) …… 236

○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663호) …… 237

■ 공 고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공인 공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1-1호) …… 239

◈◈◈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인

2021년 1월 4일

경상북도 조례 제4441호

경상북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재·부품”이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부품을 말한다.
2. “장비”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비를 말한다.
3. “핵심전략기술”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심전략기술을 말한다.
4.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문기업을 말한다.
5.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란 법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 · 부품 · 장비산업의 기반조성, 기업 경쟁력강화, 핵심전략기술의 안정적 확보 등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 기술적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등) ① 도지사는 소재 · 부품 · 장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소재 · 부품 · 장비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재 · 부품 · 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소재 · 부품 · 장비 분야의 발전 전망
3. 소재 · 부품 · 장비 분야의 세계교역 및 국내수급 동향
4. 소재 · 부품 · 장비 분야의 기술 확보 등 기술력 향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소재 · 부품 · 장비산업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 추진하기 위하여 소재 · 부품 · 장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소재 · 부품 · 장비산업 지원 사업) 도지사는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2. 산 · 학 · 연 공동 기술개발 및 사업화지원, 기술창업

3.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교육

4. 소재 · 부품 · 장비 전문기업의 기술촉진 및 판로

5. 소재 · 부품 · 장비 관련 기업의 유치 및 정착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6. 국내 · 외 세미나 · 전시회 · 박람회 등의 개최 · 유치 · 참여

7. 해외 교류 · 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성화

8. 국제공동 연구개발 및 협력 사업

9.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특화단지 내 입주기업 육성

10.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 유치

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소재 · 부품 · 장비 특화단지 조성) ① 도지사는 기업 상호 간 네트워크 구축, 신기술의 공동 연구개발, 소재 · 부품 · 장비의 생산 공급 및 연계비용의 절감 등의 시너지효과가 창출되도록 소재 · 부품 · 장비 특화단지의 지정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을 시행하는 시장 · 군수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입지지원 등) 도지사는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 외 투자 기업에 대하여 입지공급, 투자절차 간소화 및 투자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도 출자 · 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소재 · 부품 · 장비 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기업 · 기관 · 단체 · 개인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인

2021년 1월 4일

경상북도 조례 제4442호

경상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에 따라 경상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경상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입주기업체 등의 입주 수요 등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지정요청자의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사항
3. 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물류, 교통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를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물류단지를 지정하거나,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는 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6명 이상 8명 이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위원 중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을 각각 선정하여 총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회의는 제2항에 따른 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도지사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릴 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과 관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실수요 검증) 위원회가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일반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7조(현장확인 및 의견청취) 위원장은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물류정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인

2021년 1월 4일

경상북도 조례 제4443호

경상북도물류정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경상북도물류정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6조제5항에 따라 경상북도 물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상북도 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경상북도 물류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경상북도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 정책사항

2. 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물류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사항

4. 국제물류의 촉진·지원에 관한 중요 정책사항

5.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경상북도 물류체계 및 물류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경제실, 농축산유통국, 건설도시국, 해양수산국의 실·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북도 및 인접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

2.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물류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소비자 또는 시민대표

4.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에 따른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영 제11조에 따른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회의진행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여 회의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인

2021년 1월 4일

경상북도 조례 제4444호

경상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등”이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등을 말한다.
3. “어린이 통학로”란 초등학교등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4.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제3조(도 등의 책무) ① 경상북도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모든 도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도지사는 매 5년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
3.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의 부속물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경상북도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승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매년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의 부속물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 ① 도지사는 초등학교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초등학교등의 자체 교육

2.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7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도지사는 초등학교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시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 단체 등에 의한 등·하교 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도지사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

량 통제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지방경찰청과 협의를 통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보행안전 보조장치 및 정류시설 등)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에 보행안전 보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 초등학교등의 장의 요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 등 어린이 통학 교통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도지사는 어린이 통학로, 교육시설 등의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경상북도지방경찰청, 경상북도교육청, 전문가 및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학부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어린이의 등·하교 시 통학안전을 위한 등·하교 길 교통지도 사업
2.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 교육 등 어린이 안전 증진을 위한 교육 사업
3.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통한 교통안전 문화의식 확립 사업
4. 그 밖에 어린이 교통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인

2021년 1월 4일

경상북도 조례 제4445호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조례는”을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만15세”를 “19세”로 하고,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신설한다.

6.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의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

하 “시행계획”이라 한다)”를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상북도 청년정책위원회”를 “경상북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청년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 청년의 생활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승인된 경상북도 청년통계로 대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경상북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 제목 “청년정책위원회”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의 · 의결한다”를 “심의 · 조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기본계획”을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제10항, 제11항, 제12항, 제1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⑪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⑫ 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와 자료 검토 및 위임된 사항의 처리 등을 위하여 청년정책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⑬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

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⑭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청년의 날) 도지사는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홍보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26조 중 “청년권익 증진에 공로가 있거나”를 “법 제26조에 따라 청년발전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및”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인

2021년 1월 4일

경상북도 조례 제4446호

경상북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 · 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경제적 · 신체적 · 정서적 ·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경상북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 목표 및 방향
2. 고독사 예방정책의 추진체계
3. 고독사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4. 청년층 · 중년층 · 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대책 및 지원 방안
5.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
6.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7.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회에 대한 보고) 도지사는 시행계획과 추진실적 등을 지체 없이 경상북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등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 ·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사회복지기관, 행정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제8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3. 긴급 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과의 연계
4. 청년층 · 중년층 · 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 사업 연계
5. 방문간호서비스
6.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 · 홍보 및 상담
7. 주민 모임 참여 등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지지 강화 사업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 · 연계 서비스

9.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기준, 방법,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시 · 군 및 기관 ·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도지사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전문 인력의 양성 · 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 · 군 및 관련 기관 ·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고독사위험자의 권리보호) ① 도지사는 고독사 예방 대책을 실시할 때에는 고독사한 사람, 고독사위험자 및 이들의 가족 · 친척 등의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고독사 예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인

2021년 1월 4일

경상북도 조례 제4447호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과 보건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 · 계층 · 분야에 관계없이 경상북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의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 · 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해 도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 시행) ①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의 목표와 방향
2. 공공보건의료의 추진 계획 및 방법
3.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4.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고,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실시되는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와 연계하여 공공보건의료 이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6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22조에 따라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보

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2.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3. 의료인력 DB구축을 통한 의료취약지 인력 지원
4.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 교육·훈련
5. 공공보건의료 자원, 실적 통계 관리 및 모니터링
6. 공공보건의료기관 운영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7. 도의 특성에 맞는 공공보건의료 사업 발굴
8. 도민 교육 프로그램, 연구조사 등을 통한 도민 참여 기반 구축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단의 구성 및 인력) ① 지원단은 지원단장을 포함하여 연구원 등 전문인력과 행정요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며,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지원단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20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④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단의 위탁 운영 등) 도지사는 지원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단 운영의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

례」를 준용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보고) ①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해당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연도 사업 추진실적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협조요청 등) ① 지원단장은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 ·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보의 제공을 제한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지원단장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④ 지원단장은 제공받은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의 분리) 제9조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은 지원단의 사업 및 운영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이를 다른 회계와 분리하여 관리한다.

제13조(지도 · 감독)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지원단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 ·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단장은 제1항에 따른 도지사의 요구에 따라 자료 등을 제출하고 지도 · 감독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14조(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보건의료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보건의료기관 및 유관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협력과 정보교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포상)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보건의료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인

2021년 1월 4일

경상북도 조례 제4448호

경상북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경북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등”란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① 도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심리적 · 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상담

2.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3.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 · 교육 프로그램 지원

4.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 ·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 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 · 단체 또는 기관에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 의무)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법인 · 단체 또는 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인

2021년 1월 4일

경상북도 조례 제4449호

경상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경상북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하여 후원이 필요한 성인을 위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지원되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의 법정후견제도를 말한다.
2. “공공후견인”이란 가족이 아니면서 자원봉사로써 신상보호 등 각종 성년후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전문가후견인” 이란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을 가진 자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후견인 등으로 선임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후견이 필요한 경상북도민이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 도지사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대상)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대상 발달장애인

2.「치매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대상 치매환자

3.「민법」 제9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후견 심판을 청구하는 미성년자 또는 가정법원에서 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미성년자

4. 그 밖에 도지사가 성년후견제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 및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후견인, 전문가후견인 양성 교육

2.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개선 등 홍보

3. 성년후견제도가 필요한 저소득층 지원

4. 다음 각 목에 따른 상담 지원

가. 일반상담: 성년후견제도 관련 전화, 대면 상담 등

나. 전문상담: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에 의한 성년후견 관련 법률, 복지 등 전문지식 관련 대면 상담

5. 그 밖에 도지사가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탁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원 사업을 관련 법인 · 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인

2021년 1월 4일

경상북도 조례 제4450호

경상북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폭탄 피해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원자폭탄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 시행)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피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피해자 지원시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피해자의 지원에 따른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피해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피해자 등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자 지원시책 개발 및 연구

2. 피해자를 위한 복지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3. 피해자 실태조사와 자료 정리

4. 피해자 의료·상담 지원 및 교육

5. 피해자 추모 사업

6. 일본 피해자단체와의 자매결연 및 교류회

7. 피해자를 위한 정보 및 자료 제공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하여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제6조(요양생활수당 등의 지급) ① 도지사는 피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피해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요양생활수당을 대신하여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의 금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자료협조 요청 등)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피해자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중지)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피해자가 지원 받기를 거절할 때
2.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때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 ·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인

2021년 1월 4일

경상북도 조례 제4451호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 ·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 ·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도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 ① 도지사가 법 제34조 및 영 제36조에 따라 도보존묘지 또는 분묘(이하 “도보존묘지등”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는 묘지 또는 분묘는 다음과 같다.

1. 향토사적 ·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2. 애향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묘지 또는 분묘

3.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범시민적 추모의 대상이 되는 인물의 묘지 또는 분묘

4. 그 밖에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묘지 또는 분묘

② 제1항에 따라 도보존묘지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의견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과 도보존묘지등의 지정 절차는 묘지 또는 분묘의 가치를 고려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인

2021년 1월 4일

경상북도 조례 제4452호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3호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5호 중 “그 밖에 수탁기관이 약정서 위반 및 도의 행정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를 “그 밖에 수탁기관이 약정서를 위반 했을 때”로 한다.

제20조제10호는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상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

정에 따라 임명된 경상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경상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경상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 위탁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인

2021년 1월 4일

경상북도 조례 제4453호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4.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5. “농어민수당”이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기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농어민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공익적 가치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농어민수당의 지급) ① 도지사는 농어민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어민수당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어민수당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경상북도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 대상)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동경영주가 등록된 농어업경영체는 그 중 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도에 주소를 둔 사람

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③ 도지사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제10조에 따른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이

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2항의 지급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다.

제6조(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청 직전년도 농어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제10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
3.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4. 신청 연도 이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5. 제5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급 제외 대상으로 정한 사람

제7조(지급액 및 지급 방법) ①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액을 정한다.

② 농어민수당은 시장ㆍ군수의 판단에 따라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지급한다.

제8조(지급 절차) ① 농어민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농어민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소요예산 총액을 산정하고 도지사에게 분담비율에 따라 도비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농어민수당의 신청방법 및 지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지급 중지) ①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농어민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2. 제5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4. 사망,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농어민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있었던 날의 다음 해부터 3년간 농어민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제10조(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농어민수당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심의위원회를 둔다.

1.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

2. 지급 시기와 지급 방법

3. 교육 및 홍보, 성과평가

4. 그 밖에 농어민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심의ㆍ의결 사항은 도의회의 동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농축산유통국장, 환경산림자원국장, 해양수산국장으

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고,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농어업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

4. 농어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민단체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2조(시·군과의 협력) 도지사는 농어민수당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예산분담 등은 시장·군수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 도지사는 매년 농어민수당 지급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14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소규모어항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인

2021년 1월 4일

경상북도 조례 제4454호

경상북도 소규모어항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업인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소규모어항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어업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통한 예산절감의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규모어항”이란 「어촌·어항법」에 따라 지정된 어항 이외에 어업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소규모 항포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업 여건의 개선과 어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내용) ① 도지사는 소규모어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규모어항 개발

2. 소규모어항 시설의 보수 및 보강

3. 소규모어항의 현황과 실태조사

4. 소규모어항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지원대상이 되는 소규모어항의 범위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소규모어항의 체계적인 관리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인

2021년 1월 4일

경상북도 조례 제4455호

경상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퇴비·액비 생산 및 에너지 자원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 등 연관산업 육성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 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2. “가축분뇨” 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말한다.
3. “자원순환” 이란 가축분뇨를 퇴·액비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자원화하여 다시 이용하

는 것을 말한다.

4. “퇴 · 액비화조직체” 란 퇴비 · 액비에 대한 성분분석 및 부숙도 측정 등 시비처방서를 발급받고, 초지 · 농경지등에 퇴비 · 액비를 살포하는 공동자원화시설, 퇴비 · 액비 유통센터를 말한다.

5. “에너지화조직체” 란 축분을 활용하여 고체, 액체, 기체 형태 바이오연료 및 원료물질을 생산, 가공, 유통하여 소비처에 납품하거나 바이오연료를 자체 생산 및 활용하는 단체, 법인 등을 말한다.

6.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장 · 군수, 축산농가, 자원순환조직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적 ·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축산농가, 생산자단체, 퇴 · 액비화조직체 및 에너지화조직체 등의 자원순환조직체는 고품질의 퇴액비 및 바이오연료 생산과 활용 등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다.

1. 자원순환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가축분뇨 발생량 및 자원화 현황

3. 연도별 · 지역별 가축사육 현황

4. 가축분뇨 발생 및 자원순환 예상량과 보관 · 수집 · 운반 및 가공 처리에 관한 사항

5. 자원순환을 위한 전담조직 운영 및 소요 재원의 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원순환 활성화 실천) ①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람과 자원순환조직체는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활성화 실천을 위하여 가축분뇨를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자원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퇴 · 액비 및 가축분뇨 고체 연료를 생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퇴비는 「비료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고시한 비료공정규격 중 퇴비 공정규격으로 생산할 것

2. 액비는 「비료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고시한 비료공정규격 중 가축분뇨발효비료(액)의 공정규격으로 생산할 것(다만, 질소 전량의 최소 함유량은 10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3.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생산할 때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2에 따라 고시한 공정규격으로 생산할 것

③ 자원순환조직체는 가축질병 예방을 위하여 자원화시설 출입구에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의 소독설비 및 실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시장 · 군수가 정기적인 품질관리를 하도록 지도 점검하고 기준 미달 고체연료나 원료물질에 대해서는 퇴비로 전환 활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가축분뇨 자원화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도지사는 가축분뇨 자원화, 비료화, 에너지화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기술의 개발 · 보급 등) ① 도지사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 · 보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원순환 활성화 기술 또는 자재를 개발 보급하거나 연구하는 사람
2.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 생산자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사람

② 도지사는 시장 · 군수, 자원화조직체, 생산자단체 및 축산농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원순환 활성화 기술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자원순환 활성화 우수 농장 및 자원화조직체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퇴 · 액비 및 바이오 연료 생산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가축분뇨의 퇴액비화 실적이 우수한 조직체, 생산자단체 등에 생산, 유통시설 확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실적이 우수한 농가, 조직체, 생산자단체 등에 바이오에너지의 생산과 가공, 유통 및 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제9조(경영안정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고품질의 퇴 · 액비 및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는 자원순환조직체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원순환 활성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자원화조직체 등의 경영 컨설팅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실적 평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 · 군별 가축분뇨 자원순환 실적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공동자원화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2. 퇴 · 액비 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가축분뇨 에너지화에 관한 사항
4. 가축분뇨 자원순환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축산농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인

2021년 1월 4일

경상북도 조례 제4456호

경상북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산업의 육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김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김치”란 「김치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김치를 말한다.
2. “김치재료”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김치재료를 말한다.
3. “김치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김치산업을 말한다.
4. “김치사업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김치사업자를 말한다.

5. “제조기술등” 이란 김치의 품질향상 · 포장 · 저장 · 제조기술 및 제조기기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김치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필요한 여건 조성과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계획 수립 · 시행) ① 도지사는 김치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경상북도 김치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김치산업의 목표와 방향

2.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 개발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통계조사) ① 도지사는 진흥계획 수립과 김치산업 발전을 위하여 김치(수입김치를 포함한다)와 관련된 생산 · 유통 · 소비 등에 관하여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경북김치의 정체성 · 차별성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북김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김치산업진흥위원회) ① 도지사는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경상북도 김치산업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김치유통센터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김치의 세계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김치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 기능은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7조(우수김치재료의 사용 등) ① 도지사는 고품질 김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김치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김치재료 사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품질인증품,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제품

2.「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받은 제품 및 무농약농수산물 등의 인증을 받은 김치재료

3. 그 밖에 도지사가 인증한 우수농수산물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김치재료 중 도내의 김치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품질 등급화 및 안정화) 도지사는 고품질 김치의 생산 및 품질 안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김치 맛 표준지표 개발 및 등급화

2. 김치 우수종균 보급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기반시설 구축) 도지사는 김치산업 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김치재료가공시설의 신 · 증설

2. 김치가공시설의 신 · 증설

3. 저온저장시설 확충

4. HACCP 인증을 위한 시설 지원

5. 기반시설장비 임차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전통김치 복원 및 기술개발 지원) 도지사는 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발전을 위하여 전통김치의 제조기술을 복원 또는 계승하는 전문연구기관,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김치재료 공급과 소비촉진) 도지사는 김치재료로 사용되는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촉진을 위하여 공동구매, 계약재배 등 농어업과 연계강화를 위한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시장개척 및 판로지원) 도지사는 김치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내외 시장개척 및 판로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글로벌 인증 기준에 맞춘 생산시스템 개선

2. 수출용 기능성 김치 연구개발

3. 소비 트랜드를 반영한 맞춤형 제품 연구개발

4. 김치의 우수성을 강조한 마케팅

5. 수출 컨설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품평회 등) ① 도지사는 김치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매년 김치 품평회 및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품평회 및 경진대회 등에서 선정된 우수한 김치에 대하여 산업화

및 브랜드화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김치사업자 브랜드 제고) ① 도지사는 김치사업자의 김치 브랜드 제고를 위하여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우수농산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경상북도우수농산물로 지정된 김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포장재, 입간판 지원

2. 창업보육 및 경영 등 지원

3. 제조기술등에 대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우선구매 권장)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도내 공공기관이 경상북도우수농산물로 지정된 김치를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6조(예산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단체 및 김치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사업

2.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른 품질인증 취득

3. 김치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 설치 · 운영

4. 김치 제조기술과 식문화 보급에 필요한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5. 법 제20조의2에 따른 김치문화의 계승 · 발전을 위한 김치의 날 관련 행사

6. 그 밖에 김치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7조(원산지표시 지원) 도지사는 김치의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김치재료 원산지 표시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김치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해 관련 연구기관, 학교, 김치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농산물 정보기반 생산 및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2021년 1월 4일

경상북도 조례 제4457호

경상북도 농산물 정보기반 생산 및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농산물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농산물 홍보 및 마케팅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경상북도 농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 신뢰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농산물의 생산·유통 정보(이하 “농산물 정보”라 한다)를 수집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산물 정보를 활용한 홍보 및 마케팅 사업기반 구축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농산물 정보의 수집·관리체계의 구축과 이를 활용한 홍보 및 마케팅 사업기반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품목·시기별 농산물 정보 조사 사업
2. 농산물 정보의 기반 구축 및 체계 지원 사업
3. 농산물 정보 수집과 활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4. 농산물 정보를 정보통신기술과 연계한 홍보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위탁기관 및 시·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 협조 등) ① 도지사는 농산물 정보 기반의 생산 및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및 관계기관·생산자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산물 생산 및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생산자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등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우수사례 발굴) 도지사는 농산물 정보기반의 생산 및 유통활성화 사례가 확산 · 전파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해녀문화 전승 · 보전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인

2021년 1월 4일

경상북도 조례 제4458호

경상북도 해녀문화 전승 · 보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어촌문화유산인 해녀문화를 체계적으로 전승 및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녀”란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하여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안의 마을어장에서 잠수하여 수산물을 포획 · 채취하고 있거나 이와 같은 일에 종사했던 여성을 말한다.
2. “해녀문화”란 도내의 해녀들이 물질과 함께한 생활에서 생겨난 유 · 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하며, 물질기술, 어로민속지식, 신앙, 노래, 작업 도구와 옷, 공동체의 생활양식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녀문화의 전승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해녀문화의 전승 및 보전을 위하여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해녀문화 발굴·조사·연구
2. 해녀어장 보호 및 관리
3. 해녀문화 세계화 및 홍보
4. 청년해녀 유입 정책 및 사업 추진
5. 그 밖에 해녀 관련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설치 등) 도지사는 해녀문화의 전승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해녀문화전승보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환동해지역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해녀문화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과 해녀문화 관련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6조(해녀문화사업) ① 도지사는 해녀문화의 전승 및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해녀 관련 어촌마을 행사 및 축제 개최
2. 해녀 관련 학술대회 및 연구 기록·보존 사업

3. 해녀 전통음식문화 전승 및 보전

4. 해녀 관련 이미지 및 콘텐츠 제작ㆍ배포 사업

5. 해녀증 발급 및 해녀학교교육 사업

6. 해녀 육성 및 해녀문화 사업

7. 그 밖에 해녀문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해녀문화의 발굴과 전승ㆍ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해녀문화교육 등) ① 도지사는 해녀문화의 전승을 위하여 해녀문화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해녀의 삶과 사회ㆍ문화ㆍ역사적 가치 등을 조명하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연구ㆍ전시 시설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국내외 해녀문화지역이나 관련 기관과의 교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 도지사는 해녀문화 전승 및 보전에 관한 사업 및 행사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인

2021년 1월 4일

경상북도 조례 제4459호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가 해양레저와 해양관광의 중심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양레저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
2. “해양레저관광”이란 국민의 건강 · 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을 위해 해양과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광활동과 해양레저 · 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레저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양레저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해양레저관광 육성 종합계획) ① 도지사는 해양레저관광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레저관광 정책방향
2.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및 육성 시책
3. 해양레저관광 관련 시설 등의 개발계획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도지사는 해양레저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해양레저관광 관련시설 조성
2. 해양레저관광 특화지역 조성
3. 해양레저관광 자원 조사 · 연구 및 산업화
4. 해양레저관광 교육 · 체험프로그램 및 전문 인력 양성
5. 해양레저관광 관련 문화 확산 및 저변 확대
6. 해양레저관광 홍보 및 마케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해양레저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레저관광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해양레저관광육성자문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받기 위하여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육성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종합계획의 수립 ·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사업에 관한 사항
3. 재정지원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해양레저관광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해양레저관광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3. 해양레저관광 관련 학과 부교수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해양레저관광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홍보위원의 위촉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제6호에 따라 해양레저관광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해 홍보위원 등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홍보위원 등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포상) 도지사는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발전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인

2021년 1월 4일

경상북도 조례 제4460호

경상북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라 경상북도 연안해역에서 발생되는 해양폐기물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생태계의 훼손을 방지하고, 해양 환경을 개선 및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안해역”이란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양을 말한다.
3. “해양폐기물”이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양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해양폐기물의 발생 방지 및 환경친화적인 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해양 환경 보호와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 시행) 도지사는 해양폐기물 발생 방지 및 수거 · 정화 등 처리를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양폐기물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연차별로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1. 해양폐기물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해양폐기물의 유입 차단 및 수거 · 정화 등 처리
3. 해양폐기물 재활용 촉진
4. 해양폐기물 발생 원인 및 현황에 대한 조사 · 연구
5. 해양폐기물 수거 · 정화 등 처리 사업 지원
6. 해양폐기물 발생예방 교육
7. 그 밖에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해양폐기물의 발생 원인, 유입 경로, 발생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해양폐기물 발생 방지 및 수거 · 정화 등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해양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2. 해양폐기물 발생 방지 및 유입 차단 시설의 설치 · 운영
3. 해양폐기물 처리 등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구입 · 운영
4. 해양폐기물에 대한 조사 · 연구

5. 해양폐기물 발생 방지 등을 위한 교육 · 홍보

제7조(지도 · 감독)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 방문조사 등의 지도 · 감독할 수 있다.

제8조(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 · 변경

2. 해양폐기물 유입 차단 등 사전 방지

3. 해양폐기물 수거 · 정화 등 처리

4.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해양수산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폐기물 처리 및 해양 관련 대학교수

2. 하천 및 해양수산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이 풍부한 사람

3. 해양 및 육상 폐기물 처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폐기물 방제 및 해안관리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협력 등) ① 도지사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시 · 군 및

어촌계, 민간단체,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해양폐기물 발생 방지 및 수거·정화 등 처리에 관한 사무를 해양폐기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인

2021년 1월 4일

경상북도 조례 제4461호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의 제명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지원계획의 수립 · 시행)”을 “(지원계획의 수립 · 시행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가업승계 농업인의 자격요건 및 선발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할 수 있다”를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인

2021년 1월 4일

경상북도 조례 제4462호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의 기반조성” 을 “친환경축산업의 기반조성” 로 한다.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깨끗한 축산농장” 이란 가축사육밀도 기준 준수, 악취방지시스템 설치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어 시군 및 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평가 지정한 농장을 말한다.

제3조 중 “강구” 를 “마련” 으로 한다.

제4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안전관리인증농장, 환경친화축산농장, 동물복지축산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확대 방안

제6조제1항 중 “인증”을 “우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을 “우수”로, “우선 할 수 있도록 노력 공급하여야 하며”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소속 하에”를 “소속으로”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을 “친환경축산업”으로 한다.

제11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인

2021년 1월 4일

경상북도 조례 제4463호

경상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6항에 따라 구성 및 운영되는 전담기구 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6항에 따라 구성 및 운영하는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간 조사계획ㆍ활동 등의 협조에 대한 지원
2. 조사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의 지원

3. 조사 및 처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의 지원

4.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전담기구 협의회의 운영 및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 업무(이하 “안전감찰 업무”라 한다)를 담당(안전감찰 전담기구 또는 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원이 되며, 위원장은 협의회 성과향상을 위해 안전분야 민간단체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안전감찰 업무 및 안전분야 부패 근절 활동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협의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감찰 전담기구 또는 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의 부서장이 된다.

제4조(회의) ①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2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제2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일정 및 안건

등의 회의 정보를 알려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개최를 위하여, 회의 개최 전, 협의회 위원에게 안전감찰 업무를 추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운영 세부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 및 협의 등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제3조제5항에 따른 협의회의 간사가 주재하며, 참석자는 협의회 위원이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중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실무협의회는 업무연찬을 위하여, 포럼・워크숍・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관계 기관 등에서의 협조요청)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할 구역 내 중앙부처 산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운영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인

2021년 1월 4일

경상북도 조례 제4464호

경상북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경상북도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 소속 소방공무원이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인적·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에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활동”이란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을 말한다.
2. “소방기관”이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을 말한다.
3. “소방대”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를 말한다.
4. “청구인”이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소방활동으로 인해 인적·물적 손실(이하 “손실”이라 한다)을 입고 그 보상을 청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 소속 소방공무원(이하 “소방공무원”이라 한다)의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청구인에게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실조사 및 기록유지) 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도 소방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이하 “본부장 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본부장 등으로 하여금 사실조사 내용을 전산으로 기록 ·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손실보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2.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3. 법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다만, 법 제2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5. 그 밖에 도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및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제6조(소송비용 등의 지원)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이 소방 · 재난 현장 활동 중 발생된 손실로 인하여 민 ·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법률상담, 변호인 선임 비용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청구방법 및 처리) ① 청구인은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관할 소방서장에게 별지 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접수한 관할 소방서장은 해당 청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거부하거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청구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상신청을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요건과 절차의 흠결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8조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손실보상 여부와 그에 따른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심의 결과와 손실보상 지급 여부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 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재심의 등으로 심의 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는 경우 또는 손실보상 금액이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손실보상을 심의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1. 소속 소방공무원

2. 판사 ·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5. 소방안전 또는 의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이나 감정을 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의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해임)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및 해임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12조(비밀 누설의 금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경상북도교육감 임 종 식

2021년 1월 4일

경상북도 조례 제4465호

경상북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경상북도내 각급 학교의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경상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평화·통일교육은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통일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1. 민족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한 통일 실현 의지 고양
2.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통일관 확립
3. 통일과정의 평화적 실천을 위해 상호문화를 존중하고 배려, 소통,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태도 함양

4. 평화·공존의 관점을 기반으로 미래 세대의 통일 역량 증진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상호 이해와 공존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지향적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법 제8조에 따른 평화·통일교육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청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계획(이하 “통일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평화·통일교육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교육과정과 연계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3. 평화·통일교육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내·외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방안

4. 교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 활성화 및 전문 인력 활용 방안

5. 그 밖에 교육청의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평화·통일교육과 관련된 기관이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5조(평화·통일교육 역량 강화) ① 교육감은 평화·통일교육 관련 각종 연수 활성화, 평화·통일교육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평화·통일교육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통일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체험학습을 운영 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및 비영리 법인 단체의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사업비를 「경상북도 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효율적인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교육 관계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교육감은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큰 공무원 또는 학생, 학교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경상북도교육감 임 종 식

2021년 1월 4일

경상북도 조례 제4466호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교교육을 통해서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향상시키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학교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학교환경교육”이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유아 또는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실

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환경교육 진흥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제4조(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 장학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환경교육 담당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3. 환경동아리, 환경체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절약, 저탄소 녹색실천, 신 재생에너지 체험, 환경재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 사업)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학교환경교육 담당 교원 연수
4.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6. 학교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

7.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8.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학교환경교육 진흥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학교환경교육 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현장체험학습의 기회 확대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기업체, 공공기관, 대학 등과의 협력이나 교육기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7조(학교환경교육 진흥협의회 구성 · 운영)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경상북도교육청의 환경교육담당 국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회장 및 환경교육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교육계, 학계, 관련 전문기관, 시민사회단체 및 그 밖에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⑤ 회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8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 출타, 품위손상 등의 원인으로 기존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경상북도교육청의 환경교육 담당 장학관이 되고 서기는 환경교육 담당 장학사가 된다.

제10조(수당 지급)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 ① 교육감은 질 높은 환경교육 및 전문교원의 양성을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에 대한 연수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 및 여러 가지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2조(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지정) ① 교육감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4조(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 ①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에 따른 외부 전문가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성과가 우수한 개인, 단체 및 기관에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상북도 고시 제2021-1호

거두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거두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계획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4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업의 목적 : 농업용수 부족 지역에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및 농업 생산기반 조성으로 농업 소득증대에 기여함

2. 사업의 내용 및 구역

가. 사 업 명 : 거두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

나. 위 치 : 경북 청송군 현동면 도평리 일원

다. 수혜면적 : 33.7ha (신규 33.7ha, 기설 - ha)

라. 사 업 량

○ 수원공 : 저수지 1개소 (총저수량 20.8만㎥, 유효저수량 20.5만㎥)

- 제방 : 신설 L=110.7m, H=22.8m

- 물넘이방수로 : 물넘이 L=12.0m, 방수로L=88.0m(평균폭=4.5m)

- 복 통 : 강관 D=1.5m, L=112.2m

- 사 통 : 3공(D=300㎜)

- 이설도로 : 2조 660.8m, B=3.5~4.0m(Con'c포장, B=2.5~3.0m)

3. 사 업 비 : 6,485백만원

4. 사업예정기간 : 2021. 1. ~ 2024. 12. 31.

5. 사업의 효과 : 수자원 확보, 영농환경 개선

6. 사업시행자 : 청송군수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8. 기 타 : 관계 설계도서는 청송군 안전재난건설과(☎054-870-6365), 한국농어촌공사 청송 · 영양지사(☎054-870-0532)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청송	현동	도평	13	전	2,853	411	정원호	현동면 도평동 500				
2	청송	현동	도평	42	임	1,223	119	이무술					미등기
3	청송	현동	도평	44	전	2,608	2,608	청송군	거두마을길263				기취득
4	청송	현동	도평	45	전	314	314	청송군	거두마을길263				기취득
5	청송	현동	도평	46	임	982	982	김덕윤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2로30번가길23, 402호(우동, 태석아파트)				
6	청송	현동	도평	51	답	2,126	2,126	청송군	거두마을길263				기취득
7	청송	현동	도평	52	전	2,119	2,119	청송군	거두마을길263				기취득
8	청송	현동	도평	53	임	493	493	이광재					미등기
9	청송	현동	도평	54	답	1,341	1,341	청송군	거두마을길263				기취득
10	청송	현동	도평	54-1	답	173	173	청송군					
11	청송	현동	도평	55	대	660	660	청송군	거두마을길263				기취득
12	청송	현동	도평	55-1	전	29	29	청송군	거두마을길263				기취득
13	청송	현동	도평	55-2	전	6,273	6,273	청송군					기취득
14	청송	현동	도평	56	전	486	486	청송군					기취득
15	청송	현동	도평	57	임	757	757	윤덕언					미등기
16	청송	현동	도평	58-3	답	78	78	청송군					
17	청송	현동	도평	58-4	답	147	147	청송군					
18	청송	현동	도평	59	과	6,961	6,961	정용락	현동면 도평리 254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9	청송	현동	도평	59-1	답	134	134	청송군					
20	청송	현동	도평	60	임	499	499	오원석					미등기
21	청송	현동	도평	66	임	704	184	김용이					미등기
22	청송	현동	도평	68	전	1,709	1,709	정형락	칠곡군 동명면 백송로552-20				
23	청송	현동	도평	69	전	1,967	1,967	정원호					
24	청송	현동	도평	70	전	298	298	임정자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청원로400-6				
25	청송	현동	도평	71	답	205	205	김삭불이	현동면 도평동 81				
26	청송	현동	도평	72	임	53	53	김용이					미등기
27	청송	현동	도평	73	답	248	248	청송군					기취득
28	청송	현동	도평	74	대	321	321	청송군					기취득
29	청송	현동	도평	75	대	723	723	정용락	현동면 도평리 254				
30	청송	현동	도평	75-1	대	361	361	임정자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청원로400-6				
31	청송	현동	도평	76	답	79	79	정용락	현동면 도평리 254				
32	청송	현동	도평	77	대	253	253	이광재					미등기
33	청송	현동	도평	77-1	대	246	246	이재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51 나길 36,201동 102호 (공릉동, 태릉현대홈타운스위트)				
34	청송	현동	도평	78	대	350	350	정용락	현동면 도평리 254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5	청송	현동	도평	79	전	3,795	3,795	청송군					기취득
36	청송	현동	도평	81	전	4,053	207	정진영	대구시 동구 반야월북로53길 10, 103동 403호(신서동,보라맨션)				
37	청송	현동	도평	81-1	전	231	180	이재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51 나길 36,201동 102호 (공릉동, 태릉현대홈타운스위트)				
38	청송	현동	도평	237-1	전	1,656	122	윤형구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도평리 256				
39	청송	현동	도평	835	구	17,042	6,106	국 (농수산부)					
40	청송	현동	도평	835-1	구	22	22	국 (농수산부)					
41	청송	현동	도평	836	도	1,025	741	국 (국토교통부)					
42	청송	현동	도평	839- 173	천	60,262	1,056	국 (건설교통부)					
43	청송	현동	도평	840	도	985	901	국 (국토교통부)					
44	청송	현동	도평	841	구	691	275	국 (농수산부)					
45	청송	현동	도평	842	도	1,088	109	국 (국토교통부)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6	청송	현동	도평	산95	임	41,256	3,136	조경애	대구광역시 북구 팔거천동로 70,105동 1107호(구암동, 금빛타운)				
47	청송	현동	도평	산96	임	65,058	580	국 (산림청)					
48	청송	현동	도평	산102	임	193,983	143	국 (산림청)					
49	청송	현동	도평	산108	임	49,190	3,568	신순남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중앙로 193, 701호(솔기아파트)				
50	청송	현동	도평	산109	임	73,388	3,673	청송군					
51	청송	현동	도평	산110-1	임	265,390	204	국 (산림청)					
52	청송	현동	도평	산138	구	231	11	국 (농수산부)					

경상북도 고시2021-2호

이전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이전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계획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4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업의 목적 : 농업용수 부족 지역에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및 농업 생산기반 조성으로 농업 소득증대에 기여함

2. 사업의 내용 및 구역

가. 사 업 명 : 이전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

나. 위 치 : 경북 청송군 주왕산면 주산지리 일원

다. 수혜면적 : 33.6ha (신규 33.6ha, 기설 - ha)

라. 사 업 량

○ 수원공 : 저수지 1개소 (총저수량 28.6만㎥, 유효저수량 27.1만㎥)

- 제방 : 신설 L=124.0m, H=27.0m
- 물넘이방수로 : 물넘이 L=11.0m, 방수로L=115.0m(평균폭=4.5m)
- 복 통 : 강관 D=1.5m, L=144.0m
- 사 통 : 3공(D=300㎜)
- 이설도로 : 1조 250.0m, B=4.0m(Con'c포장, B=3.0m)
- 송수관로 : D=200㎜, L=1,454.0m

3. 사 업 비 : 7,110백만원

4. 사업예정기간 : 2021. 1. ~ 2024. 12. 31.

5. 사업의 효과 : 수자원 확보, 영농환경 개선

6. 사업시행자 : 청송군수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8. 기 타 : 관계 설계도서는 청송군 안전재난건설과(☎054-870-6365), 한국농어촌공사 청송 · 영양지사(☎054-870-0532)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비고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1	청송	주왕산	주산지	산41-25	임	19,553	53	경상북도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2	청송	주왕산	주산지	산41-27	임	2,780	245	경상북도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3	청송	주왕산	주산지	0-9594	가		71						
4	청송	주왕산	주산지	산36	임	80,132	4,056	송정파	경북 청송군 주왕산면 주산지리 830	임성훈	청송군 부동면 부일동136	지상권	임목
5	청송	주왕산	주산지	0-9525	가		1,493						
6	청송	주왕산	주산지	0-9595	가		1,162						
7	청송	주왕산	주산지	0-9588	가		411						
8	청송	주왕산	주산지	215-3	전	3,217	3,217	안순옥	경북 청송군 부동면 이전리 830				
9	청송	주왕산	주산지	215-4	대	205	205	안순옥	경북 청송군 부동면 이전리 830				
10	청송	주왕산	주산지	215-6	답	453	453	안순옥	경북 청송군 부동면 이전리 830				
11	청송	주왕산	주산지	215-5	대	205	205	안순옥	경북 청송군 부동면 이전리 830				
12	청송	주왕산	주산지	215-7	답	83	83	안순옥	경북 청송군 부동면 이전리 830				
13	청송	주왕산	주산지	0-9586	가		623						
14	청송	주왕산	주산지	산35-1	임	1,626,323	10,758	청송군	경북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51				
15	청송	주왕산	주산지	0-9554	가		1,191						
16	청송	주왕산	주산지	215-2	전	3,421	3,421	안순옥	경북 청송군 부동면 이전리 830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비고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17	청송	주왕산	주산지	215-10	임	1,415	1,415	이순명	경북 청송군 주왕산면 주산지리				미등기
18	청송	주왕산	주산지	산40	임	337,796	15,904	청송군	경북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51				
19	청송	주왕산	주산지	1597-9	천	194,584	1,898	국	건설부				
20	청송	주왕산	주산지	0-9514	가		6						
21	청송	주왕산	주산지	275-1	전	52	31	경상북도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22	청송	주왕산	주산지	276-2	도	324	12	청송군	경북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51				
23	청송	주왕산	주산지	276-3	답	477	100	경상북도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24	청송	주왕산	주산지	278-1	답	433	48	경상북도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25	청송	주왕산	주산지	277-3	답	182	37	경상북도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26	청송	주왕산	주산지	616-1	답	132	26	경상북도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27	청송	주왕산	주산지	615-3	답	55	12	경상북도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28	청송	주왕산	주산지	614-1	답	240	38	경상북도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29	청송	주왕산	주산지	613-1	답	264	38	경상북도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30	청송	주왕산	주산지	608-1	답	589	69	경상북도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31	청송	주왕산	주산지	605-1	답	171	65	경상북도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32	청송	주왕산	주산지	606	전	169	3	한미영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369 캐슬골드파크 1513-802				
33	청송	주왕산	주산지	606-1	전	72	22	경상북도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34	청송	주왕산	주산지	603-4	답	663	120	유 진	경북 청송군 청송읍 금곡3길 4 한전사택 B동 203호	청송군 산림조합		근저당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비고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35	청송	주왕산	주산지	603-3	답	352	39	경상북도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36	청송	주왕산	주산지	595-2	도	1,181	102	청송군	경북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51				
37	청송	주왕산	주산지	595-4	답	304	18	경상북도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38	청송	주왕산	주산지	331	답	2,366	101	임재기	대구 수성구 수성동1가 96-14 우방오성타운 107동 1701호				
39	청송	주왕산	주산지	339-18	도	570	29	국	농림축산식품부				
40	청송	주왕산	주산지	330	답	2,540	85	임옥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52 초원아파트 503동 1201호				
41	청송	주왕산	주산지	340-1	구	17,718	565	국	농림축산식품부				
42	청송	주왕산	주산지	322	답	1,741	18	권만조	경북 청송군 주왕산면 주산지리 846번지				
43	청송	주왕산	주산지	339-13	도	377	8	국	농림축산식품부				
44	청송	주왕산	주산지	316	답	1,945	149	권미화	경북 청송군 청송읍 월막3길 20-2 장미아파트 B동 206호				
45	청송	주왕산	주산지	309	답	2,238	44	김영숙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121-9번지 남산그린아파트 604호				
46	청송	주왕산	주산지	339-2	도	1,597	55	청송군	경북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51				
47	청송	주왕산	주산지	288	답	2,216	70	이석우	경북 청송군 주왕산면 주산지리 942번지				
48	청송	주왕산	주산지	339	도	3,230	368	국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북도 고시 제2021-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 등 고시

청송군 현서면~안덕면 일원 “성덕다목적댐 건설사업”에 따라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변경) 및 같은 법 제40조 접도구역 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

2021년 1월 4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기정	지방도	908호선	산성 ~ 부동	청송군 현서면 수락리 ~ 안덕면 성재리	-	청송군 현서면 수락리 434-6 번지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238-5 번지	-	5.88
변경	지방도	908호선	산성 ~ 부동	청송군 현서면 수락리 ~ 안덕면 성재리	248,256	청송군 현서면 수락리 434-6 번지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238-5 번지	-	5.52

2. 접도구역의 지정 조서

도로의 종류		지방도	노선번호	908호선	노선명	산성 ~ 부동
접도구역 지정	지정구간 및 범위	○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 위 치 – 시점 : 청송군 현서면 수락리 434–6번지 – 종점 :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238–5번지 (5.52km)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 도로의 미관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접도구역 해제	해제 구간 및 범위	○ 해제구역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 위 치 – 시점 : 청송군 현서면 수락리 434–6번지 – 종점 :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238–5번지				
	해제사유	○ 성덕다목적댐 건설사업으로 기존 지방도908호선의 이설공사로 인하여 기존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을 해제하는 것임				

3.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변경) 등 사유

○ 성덕다목적댐 건설사업에 따른 지방도 908호선 변경

4. 사업 시행기간 : 2006년 ~ 2021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6.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열람기간 및 열람 : 열람장소에 비치

○ 열람기간 : 사업기간과 동일

○ 열람장소 : 한국수자원공사 청송권지사

(청송군 안덕면 성덕댐로 1191, ☏ 054–870–0322)

청송군 새마을도시과(☏ 054–870–6355)

7. 사업시행자

○ 환경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8. 도로구역 결정과 접도구역 지정 및 접도구역 해제 지형도면 등 :

붙임과 같음(도면게재 생략)

※ 붙임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성덕다목적댐 건설사업(지방도 908호선)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토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수락리	672	천	153,038	450	국	국토교통부			
2	수락리	441-11	답	204	204	국	환경부			
3	수락리	441-15	답	221	221	공	청송군			
4	수락리	439-2	답	117	117	국	환경부			
5	수락리	441-8	답	249	249	국	환경부			
6	수락리	403	답	1,140	1,140	국	환경부			
7	수락리	404-1	답	130	130	국	환경부			
8	수락리	407-2	답	23	23	국	환경부			
9	수락리	407-1	답	10	10	국	환경부			
10	수락리	409-1	전	958	958	국	환경부			
11	수락리	434-5	도	77	77	공	청송군			
12	수락리	694-1	도	14	14	국	환경부			
13	수락리	434-3	답	122	122	공	청송군			
14	수락리	695-5	구	8	8	국	기획재정부			
15	수락리	416-7	도	42	42	공	청송군			
16	수락리	433-3	답	188	188	공	청송군			
17	수락리	416-3	답	271	271	공	청송군			
18	수락리	416-5	도	132	132	공	청송군			
19	수락리	703-2	도	76	76	국	환경부			
20	수락리	431-1	답	52	52	국	환경부			
21	수락리	429-7	전	80	80	국	환경부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토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22	수락리	429-5	전	1,788	1,788	국	환경부			
23	수락리	429-2	전	7	7	국	환경부			
24	수락리	419-5	답	202	202	공	경상북도			
25	수락리	산49-8	임	181	181	국	환경부			
26	수락리	425	대	324	324	국	환경부			
27	수락리	산49-7	임	622	622	국	환경부			
28	수락리	308	전	694	694	국	환경부			
29	수락리	307	전	307	307	국	환경부			
30	수락리	304-2	전	1,687	1,687	국	환경부			
31	수락리	산49-6	임	279	279	국	환경부			
32	수락리	산101-1	천	34	34	국	환경부			
33	수락리	산49-5	임	58	58	국	환경부			
34	수락리	297-1	전	203	203	국	환경부			
35	수락리	296-1	잡	412	412	국	환경부			
36	수락리	434-6	도	67	67	공	청송군			
37	수락리	441-7	답	318	318	공	청송군			
38	수락리	441-9	답	950	950	국	환경부			
39	수락리	695-3	구	46	46	국	환경부			
40	수락리	442-2	답	33	33	국	환경부			
41	수락리	366-1	답	111	111	국	환경부			
42	수락리	405-1	답	536	536	국	환경부			
43	수락리	406-1	답	720	720	국	환경부			
44	수락리	408-1	답	1,124	1,124	국	환경부			
45	수락리	435-5	답	80	80	국	환경부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토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46	수락리	435-4	답	31	31	국	환경부			
47	수락리	413-1	전	708	708	국	환경부			
48	수락리	434-4	답	97	97	국	환경부			
49	수락리	695-2	구	24	24	국	기획재정부			
50	수락리	414-1	전	564	564	국	환경부			
51	수락리	433-4	답	152	152	국	환경부			
52	수락리	415-1	답	617	617	국	환경부			
53	수락리	416-4	답	955	955	국	환경부			
54	수락리	417-1	답	897	897	국	환경부			
55	수락리	672-5	천	123,128	3,187	국	환경부			
56	수락리	417-4	답	385	385	공	청송군			
57	수락리	419-3	도	10	10	공	청송군			
58	수락리	418-2	전	25	25	국	환경부			
59	수락리	418-3	전	72	72	국	환경부			
60	수락리	426	대	797	797	국	환경부			
61	수락리	692-4	도	11	11	국	환경부			
62	수락리	427-1	대	154	154	국	환경부			
63	수락리	424-1	창	457	457	국	환경부			
64	수락리	309-1	전	370	370	국	환경부			
65	수락리	310-1	대	115	115	국	환경부			
66	수락리	306-3	전	89	89	국	환경부			
67	수락리	306-2	전	4	4	국	환경부			
68	수락리	305-2	전	532	532	국	환경부			
69	수락리	672-6	천	847	847	국	환경부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토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70	수락리	296-3	전	2,028	2,028	국	환경부			
71	수락리	산49-4	임	17,371	17,371	국	환경부			
72	수락리	287-7	답	41	41	공	청송군			
73	수락리	287-5	도	11	11	공	청송군			
74	수락리	산49-9	임	2,609	2,609	공	청송군			
75	수락리	287-6	답	41	41	국	환경부			
76	수락리	287-3	도	76	76	공	청송군			
77	수락리	287-4	도	131	131	국	환경부			
78	수락리	산49-3	임	801	801	국	환경부			
79	수락리	286-2	도	17	17	공	청송군			
80	수락리	산37-6	임	2,966	2,966	국	환경부			
81	수락리	282-4	답	403	403	공	청송군			
82	수락리	264-6	도	344	344	공	청송군			
83	수락리	282-3	답	122	122	공	청송군			
84	수락리	산37-3	도	62	62	국	환경부			
85	수락리	산37-5	임	7,445	7,445	국	환경부			
86	수락리	265-7	도	226	226	국	환경부			
87	수락리	265-6	답	131	131	국	환경부			
88	수락리	산37-4	임	7,871	410	국	환경부			
89	수락리	268	천	635	78	국	환경부			
90	수락리	산36-3	임	2,398	774	국	환경부			
91	수락리	295	임	284	284	국	환경부			
92	수락리	산49-10	임	547	547	국	환경부			
93	수락리	294	전	294	294	국	환경부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토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94	수락리	672-8	천	77	77	국	환경부			
95	수락리	287-10	답	20	20	국	환경부			
96	수락리	287-11	답	116	116	국	환경부			
97	수락리	287-9	답	235	235	국	환경부			
98	수락리	286-4	답	188	188	국	환경부			
99	수락리	286-3	답	257	257	공	청송군			
100	수락리	284-1	답	60	60	국	환경부			
101	수락리	283-1	답	150	150	국	환경부			
102	수락리	282-5	답	713	713	국	환경부			
103	수락리	265-3	답	33	33	공	청송군			
104	수락리	264-5	답	75	75	국	환경부			
105	수락리	264-8	답	31	31	공	청송군			
106	수락리	264-6	도	344	344	공	청송군			
107	수락리	264-7	답	21	21	공	청송군			
108	수락리	265-8	답	9	9	공	청송군			
109	수락리	267	천	180	20	국	환경부			
110	수락리	690-4	구	2,636	245	국	환경부			
111	수락리	산36-7	임	6,417	12	국	환경부			
112	수락리	산35	임	590	547	국	환경부			
113	수락리	산33-5	임	7,951	7,585	국	환경부			
114	수락리	산33-2	임	11,561	1,660	국	환경부			
115	수락리	산25-1	도	1,940	343	공	청송군			
116	수락리	산25-3	임	112	38	공	청송군			
117	수락리	산25-7	임	9,053	9,053	국	환경부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토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18	수락리	산25-8	임	941	941	국	환경부			
119	수락리	245-4	전	492	492	국	환경부			
120	수락리	685-1	구	271	271	국	환경부			
121	수락리	171-2	전	1,148	1,148	국	환경부			
122	수락리	171	전	510	510	국	환경부			
123	수락리	산35-3	임	1,809	583	국	환경부			
124	수락리	산25-9	임	1,623	1,623	국	환경부			
125	수락리	245-1	임	370	370	국	국토교통부			
126	수락리	산94-1	구	299	299	국	환경부			
127	수락리	246-1	전	178	178	국	환경부			
128	수락리	247-1	전	822	822	국	환경부			
129	수락리	산28	임	1,703	1,703	국	환경부			
130	수락리	169	전	526	526	국	환경부			
131	수락리	169-1	전	129	129	국	환경부			
132	수락리	산28-2	임	445	445	국	환경부			
133	수락리	166	임	179	179	국	환경부			
134	수락리	164-1	전	111	111	국	환경부			
135	수락리	151	답	20	20	국	환경부			
136	수락리	150-4	전	391	391	국	환경부			
137	수락리	산22-6	임	101	101	국	환경부			
138	수락리	산22-4	임	20,829	20,759	국	환경부			
139	수락리	산22-7	임	55	55	국	환경부			
140	수락리	산21-5	임	5,500	2,139	국	환경부			
141	수락리	80	전	3,471	1,828	국	환경부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토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42	수락리	82-1	전	1,306	439	국	환경부			
143	수락리	85-5	답	54	54	국	환경부			
144	수락리	86-3	답	92	18	국	환경부			
145	수락리	85-4	답	9	9	국	환경부			
146	수락리	86-2	답	1,237	38	국	환경부			
147	수락리	85-3	잡	346	263	국	환경부			
148	수락리	85-2	대	718	699	국	환경부			
149	수락리	산27-1	임	1,987	1,987	국	환경부			
150	수락리	산25-11	임	898	898	국	환경부			
151	수락리	167	전	165	165	국	환경부			
152	수락리	산93-2	구	569	569	국	환경부			
153	수락리	산25-12	임	643	643	국	환경부			
154	수락리	150-3	전	870	870	국	환경부			
155	수락리	148-4	전	753	753	국	환경부			
156	수락리	148-5	전	212	212	국	환경부			
157	수락리	산22-5	임	1,570	1,570	국	환경부			
158	수락리	산21-16	임	5,580	497	국	환경부			
159	수락리	83-1	전	1,379	549	국	환경부			
160	수락리	82-2	도	1,501	116	공	청송군			
161	수락리	675	도	1,977	59	국	환경부			
162	수락리	84-1	유	66	27	국	환경부			
163	수락리	84	유	450	163	국	환경부			
164	수락리	103	유	14,896	542	국	환경부			
165	수락리	산12-4	임	7,494	7,494	국	환경부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토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66	수락리	산11-2	임	10,858	10,858	국	환경부			
167	수락리	산11-1	임	39,502	2,042	국	환경부			
168	수락리	산91	구	5,125	280	국	환경부			
169	수락리	산6-1	임	29,356	3,177	국	환경부			
170	수락리	산6-2	임	5,476	5,476	국	환경부			
171	수락리	산6-3	임	2,361	2,361	국	환경부			
172	수락리	산5-1	임	8,426	551	국	환경부			
173	수락리	산5-2	임	5,446	5,446	국	환경부			
174	수락리	산3-1	임	18,214	490	국	환경부			
175	수락리	산3-2	임	4,032	4,032	국	환경부			
176	수락리	산3-3	임	393	393	국	환경부			
177	무계리	898-6	천	75,941	1,043	국	환경부			
178	무계리	169	유	129	129	국	환경부			
179	무계리	917	도	3,970	124	국	환경부			
180	무계리	168-3	도	116	67	국	환경부			
181	무계리	170-2	유	423	28	국	환경부			
182	무계리	170-1	도	7	3	국	환경부			
183	무계리	168-4	도	23	4	공	청송군			
184	무계리	168-2	유	671	48	국	환경부			
185	무계리	168-1	유	1,187	567	국	환경부			
186	무계리	산1-4	임	21,554	1,867	국	환경부			
187	무계리	산1-5	임	295	295	국	환경부			
188	성재리	산43-2	임	3,188	3,188	국	환경부			
189	성재리	산43-1	임	9,745	1,293	국	환경부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토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90	성재리	산89	구	2,943	211	국	환경부			
191	성재리	산40-7	임	32,125	1,890	국	환경부			
192	성재리	산40-9	임	13,021	13,021	국	환경부			
193	성재리	산88-1	구	46	46	국	기획재정부			
194	성재리	산43-3	임	491	491	국	환경부			
195	성재리	산38-5	임	5,292	5,292	국	환경부			
196	성재리	산38-4	임	1,819	1,819	국	환경부			
197	성재리	133	전	2,565	2,565	국	환경부			
198	성재리	산38-3	임	1,272	1,272	국	환경부			
199	성재리	155-6	과	2,387	2,387	국	환경부			
200	성재리	155-7	전	812	812	국	환경부			
201	성재리	155-8	전	709	709	국	환경부			
202	성재리	156-5	전	72	72	국	환경부			
203	성재리	157-3	대	704	704	국	환경부			
204	성재리	597-3	도	430	430	국	환경부			
205	성재리	157-1	전	980	980	국	환경부			
206	성재리	169	대	476	476	국	환경부			
207	성재리	671	도	268	268	국	환경부			
208	성재리	672-1	구	179	179	국	환경부			
209	성재리	181-8	답	86	86	공	청송군			
210	성재리	181-5	답	240	240	공	청송군			
211	성재리	181-2	답	573	573	공	청송군			
212	성재리	181-1	답	1,214	1,214	국	환경부			
213	성재리	181-3	답	122	122	국	환경부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토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214	성재리	658	천	276,649	937	국	국토교통부			
215	성재리	658-36	천	323	323	국	환경부			
216	성재리	667-1	도	98	98	국	환경부			
217	성재리	209-1	임	162	162	국	환경부			
218	성재리	210-1	과	3,811	3,811	국	환경부			
219	성재리	226-8	과	30	30	국	환경부			
220	성재리	226-7	전	29	29	공	청송군			
221	성재리	166-7	답	311	311	국	환경부			
222	성재리	236-4	답	97	97	공	청송군			
223	성재리	236-3	도	75	75	국	환경부			
224	성재리	166-6	답	173	173	국	환경부			
225	성재리	579-4	구	62	62	국	환경부			
226	성재리	166-5	답	130	130	국	환경부			
227	성재리	235-4	도	41	41	국	환경부			
228	성재리	235-5	답	153	153	공	청송군			
229	성재리	166-4	답	611	611	국	환경부			
230	성재리	238-4	답	55	55	공	청송군			
231	성재리	238-3	도	7	7	국	환경부			
232	성재리	240-4	도	25	25	국	환경부			
233	성재리	238-5	도	256	256	공	청송군			
234	성재리	240-5	답	92	92	공	청송군			
235	성재리	산34-12	임	61	61	국	환경부			
236	성재리	105-1	전	543	543	국	환경부			
237	성재리	산34-11	임	190	190	국	환경부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토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238	성재리	산34-10	임	64	64	국	환경부			
239	성재리	155-9	구	257	257	국	농림축산식품부			
240	성재리	산34-9	임	158	158	국	환경부			
241	성재리	산34-8	임	304	304	국	농림축산식품부			
242	성재리	156-4	과	1,283	1,283	국	환경부			
243	성재리	157-4	전	532	532	국	환경부			
244	성재리	157-2	과	2,836	2,836	국	환경부			
245	성재리	243-5	답	522	522	국	환경부			
246	성재리	168	전	221	221	국	환경부			
247	성재리	243-4	답	149	149	국	환경부			
248	성재리	599-4	구	112	112	국	환경부			
249	성재리	167	전	2,091	2,091	국	환경부			
250	성재리	599-3	구	156	156	국	환경부			
251	성재리	161	과	3,919	3,919	국	환경부			
252	성재리	165-2	대	344	344	국	환경부			
253	성재리	165-4	답	28	28	공	청송군			
254	성재리	165-3	답	40	40	공	청송군			
255	성재리	658-35	천	94	94	국	환경부			
256	성재리	211-1	과	1,430	1,430	국	환경부			
257	성재리	668-1	구	460	460	국	환경부			
258	성재리	218-1	과	878	878	국	환경부			
259	성재리	224-4	답	58	58	공	청송군			
260	성재리	224-5	과	54	54	국	환경부			
261	성재리	223-9	답	76	76	공	청송군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토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262	성재리	223-11	답	121	121	국	환경부			
263	성재리	223-8	답	39	39	공	청송군			
264	성재리	223-10	답	92	92	국	환경부			
265	성재리	222-1	답	1,358	1,358	국	환경부			
266	성재리	222-3	도	203	203	국	환경부			
267	성재리	221-1	과	1,959	1,959	국	환경부			
268	성재리	222-4	답	87	87	공	청송군			
269	성재리	221-4	답	3	3	국	환경부			
270	성재리	221-3	도	41	41	국	환경부			
271	성재리	235-2	도	56	56	국	환경부			
272	성재리	220-1	묘	44	44	국	환경부			
273	성재리	250-7	도	146	146	국	환경부			
274	성재리	250-5	과	290	290	국	환경부			
275	성재리	250-8	전	110	110	공	청송군			

경상북도 고시 제2021-4호

2021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9조의2 제6항에 의거 2021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4일

경 상 북 도 지 사

□ **2021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시군	단지명	단지 유형	지정계획 면적(천㎡)	산업용지 면적(천㎡)	사업시행자	비고
계	11개소		5,787	2,767		
예천군	예천제3농공단지	농공	195	141	예천군수	
영천시	영천금호 일반산단	일반	279	173	영천시장	
의성군	의성바이오밸리 일반산단	일반	225	138	의성군수	
안동시	경북바이오2차 일반산단(확장)	일반	496	331	경북바이오산단개발(주)외 9개사	
경주시	외동3 일반산단	일반	110	66	정우산업개발(주)외4개사	
포항시	미남 일반산단	일반	364	248	동진이엔지(주)외6개사	
경주시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일반	2,217	840	한국원자력연구원	
영천시	영천미래형 첨단복합도시	일반	591	214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개발(주)	
칠곡군	찰곡농기계자동차 특화일반산단	일반	519	316	㈜신일정공, ㈜송정디앤씨외 22개사	
군위군	군위일반산단	일반	198	105	㈜보광산업외 6개사	
경산시	경산상림재활산업 특화단지	일반	593	195	경북개발공사	

경상북도 고시 제2021 - 5호

청송 주산지테마파크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 시행자 지정 ·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청송 주산지테마파크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 시행자 지정 · 실시계획 승인에 대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 제19조 · 제23조 규정에 따른 구역 지정,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을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일괄 지정 · 승인하고, 같은 법 제16조 · 제19조 ·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 시행자 지정 · 실시계획 승인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4일

경 상 북 도 지 사

■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에 관한 사항

1)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 ·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청송 주산지테마파크 조성사업

나) 위 치

○경상북도 청송군 주왕산면 주산지리 112-1 일원

다) 면 적

○ 33,000㎡

2)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목적 및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

가) 지정목적

○아름다운 자연경관 지닌 주산지와 주왕산국립공원을 향유할 수 있는 관광 인프라를 확충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관광편의 및 기반시설 마련으로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며 지역관광 활성화에 이바지 함

나) 사업시행기간

○2017년 ~ 2021년(5년)

3)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

가) 사업시행자

○청송군수

나) 사업시행방식

○취득,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4)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가) 기본방향

○ 본 사업을 추진 · 운영함에 있어 동 · 식물상, 대기질, 지형 · 지질, 수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 · 진동, 위락 · 경관 등 부문에 대한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철저하게 수립 추진

나) 생물다양성 및 서식지 보전방안

○ 영향예측

– 현존식생 및 식생보전등급의 변화 : 농경지 식생위주의 훼손이 예상되며,

– 이동성이 약한 일부 양서ㆍ파충류 종들의 개체수감소 등의 영향이 예상됨

○ 영향저감방안

– 공사시에 주기적 살수, 차량 이동속도 및 적재량 규제 등을 통한 비산먼지발생 억제하고 저속운행, 경적 등의 사용을 금지

– 우기시 공사를 지양하고, 야간작업을 금지

– 번식기 및 산란기를 피해 공사 실시

– 수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침사지 설치운영

– 운영시에는 사계절 특징적 경관을 연출하며, 인위적 시설물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경계획 수립

다)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영향예측

– 본 계획지구는 표고차가 심하지 않고 전체가 농경지에 위치하며 하천이 인접하나 현재 지형을 최대한 유지할 계획으로 지형훼손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영향저감방안

– 지형을 고려한 공사계획과 절ㆍ성토 사면 안정화 대책 수립

– 토사유출 방지대책으로 가배수로 및 임시침사지 설치, 발생사면 거적 및 비닐덮개 설치 등

라)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영향예측

- 계획수립으로 지형변화에 따른 기존경관에 대한 영향 발생

○ 영향저감방안

-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 및 충분한 녹지 확보
- 위압적이거나 단조롭지 않도록 저밀도의 시설물 계획을 통해 지형에 순화되는 분절감있는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외부공간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조경 식재계획을 수립

마) 수환경의 보전

○ 영향예측

- 투입인부의 생활오수 발생 : 10.2㎥/일
- 운영시 일최대 생활용수 수요량 : 44.69㎥/일, 일최대 오수발생량 : 25.02㎥/일

○ 영향저감방안

- 공사시 가배수로 및 임시침사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 운영시 용수는 현 주산지휴게소까지 인입되어 있는 상수관로에서 분기인입하여 이용
- 오수는 신규 설치된 부동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2020년 4월 준공)으로 전량 이송하여 처리
- 비점오염원 저감 계획수립 : 우수처리시 비점오염물질과 빗물 유출량이 적은 공원과 녹지에 대해 LID(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

– 포장면에 대해 투수성포장(잔디블럭)과 식생수로를 반영하여 지하수함량과 유출을 저감시키고, 집수한 우수의 최종 하천 유입전 비점오염 저감용 식생체류지를 거쳐 주산천으로 자연배제 되도록 계획

바) 대기환경기준

○ 영향예측

– 공사장비엔진가동 및 운행에 의한 비산먼지 및 질소산화물 발생

– 토사의 상・하적시 바람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

○ 영향저감방안

– 공사시 이동식 방진망을 설치하고 살수차량을 운영

– 세륜세차시설 설치 및 차량의 덮개사용

– 장비를 효율적으로 투입하고 차량속도제한 및 규제

– 운영시에는 녹지공간 최대한 확보

사) 소음・진동 환경기준

○ 영향예측

– 예측소음도가 66.0~69.1dB(A)로 계획지구 주변 정온시설에서 소음규제기준치를 초과하고, 진동은 진동목표규제기준 만족

○ 영향저감방안

– 공사시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 준수

– 가설방음판넬 설치(3m) 및 건설장비 주행속도 제한(20㎞/hr 이하)

아) 자원・에너지 순환

○ 영향예측

-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생활폐기물, 분뇨 및 폐유 발생
- 운영시 생활폐기물 발생

○ 저감방안

- 생활폐기물은 현장사무소 및 공사현장내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분리수거 후 성상별로 위탁처리
- 현장사무소 발생분뇨는 처리업자를 통해 전량 수거 위탁처리
- 발생 폐유 : 폐유 보관시설 설치 후 전량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 :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법업체 위탁처리

5) 인구수용 · 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가) 인구수용계획

○ 방문객 수요예측

- 주산지의 연관광객 수는 2012년 355,430명에서 2016년 352,412명, 2017년 442,791명, 2018년 414,202명으로 연평균 약5%의 증가율을 보임
- 연평균증가율을 관광객 수요에 적용할시, 목표연도인 2021년에는 446,892명이 주산지를 방문할 것으로 추정되며, 주차 및 편익시설은 본 사업의 시설을 이용하게 됨
- 향후 주변 관광자원화사업까지 완료후 생태적 수용율을 감안할시 사업대상지로는 연 151,188명의 관광객 방문과 이용이 예상됨

구 분	산 정 기 준	이용객수(인)	비 고
연간이용객수		151,188	
최대일이용객수	연간이용객수 ×최대일률	4,082	
최대시이용객수	최대일이용객수×동시체재율	1,918	
최 대 일 률		0.027	3계절형 (+계획일집중률)
동 시 체 재 율		0.47	3시간체제

나) 교통처리계획

(1) 진출입 동선

○ 대상지 진입도로 설치

– 하천 횡단교량을 설치(L=20m,B=13.4m)하고, 주산지 진입도로에서 대상지로 들어오는 왕복 2차로 차도 및 보행로 설치

– 이용안전을 위한 가로분리대 설치 및 보차도 분리

– 주차장 북측출입구 차량동선 교차허용(남측 진입부는 교차금지)

○ 주차장에서 소광장 및 문화공원으로 연결되는 내부도로

– 보차혼용도로 운영

(2) 대중교통 및 보행

○ 대형차 주차장내 보도변에 버스정류장 설치

○ 진입도로 주차장 구간에 양측보도 설치(폭 : 2.4~2.5m)

– 보행동선 단절구간 횡단보도 설치

(3) 주차장

○ 주산지와 절골탐방로 방문객들의 원활한 차량접근과 이용 유도

○ 소형차와 대형차 주차장 분리 설치

○ 장래 주차수요 : 242대(소형 228대, 대형 14대(승합 6대 포함))

○ 계획 주차대수 : 251대(소형 228대, 대형 23대)

– 장애인전용 8대(3%이상) 설치, 확장형 89대(30%이상) 설치

○ 주차장내 유형별 적정 통로폭 확보

– 소형차주차장 : 6.5m, 대형차주차장 : 12.0m

다) 토지이용계획

(1) 문화공원(A=12,231㎡) : 도시계획시설(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 도로 및 광장

○공원 내 이용객의 집 · 분산 및 시설지간의 연결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주동선과 시설지에 대한 연결동선, 산책로를 적절히 계획하고, 주변 시설의 진 · 출입 접근관리가 용이하도록 동선체계 수립함

○광장은 이용객의 공원 내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소광장과 주요 활동을 수용하는 휴게광장으로 구분하여 계획하고, 휴양시설과 함께 주왕산과 관련한 다양한 문화행사, 이벤트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

■ 조경시설

○주왕산과 조화되는 위요되는 녹지와 오픈스페이스 공간 조성을 통해 주산지와 관련된 사진전시나 모임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수용하고, 참여형 공간으로 방문객 및 주민의 다양한 이용과 참여를 유도

○주왕산과 주산지를 배경으로 하는 테마경관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조경시설 및 녹지를 계획

■ 휴양시설

○입지여건과 연계성을 활용하여 시설이용이 최대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주산지와 절골지구 관광객의 경유형 휴양과 공원내 단기 체류 휴식을 위한 휴식공간을 곳곳에 마련하여 주왕산의 자연경관 및 자연환경을 즐기며 힐링하는 공간으로 계획

○향후 주변 관광자원개발에 따른 시설연계를 고려하여 입지를 계획하고, 주변 캠핑장, 팬션 등 이용객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연계구성

■ 운동시설

○운동시설은 동적인 시설로 개방된 공간에 배치하도록 하며 접근성과 이용성을 최대한 고려

○주 산책로 주변에 숲 스트레칭장을 설치하여 주왕산 등산이나 주산지 관람전후로 개인 또는 소그룹 단위로 스트레칭, 운동, 명상 또는 요가 등 다양한 주왕산 산림문화를 향유 할 수 있도록 계획

■ 기타시설(녹지)

○단지의 경계부를 따라 완충과 경관 기능의 녹지를 조성하고 향토수종을 통해 자연경관과 조화되며 주왕산과 그린네트워크를 구성

(2) 주차장(A=20,769㎡) : 도시계획시설(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 주차시설

○이용객의 편의를 고려하여 중심도로변으로 주차장을 배치하여 접근성을 높이면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도록 계획하여 단지활성화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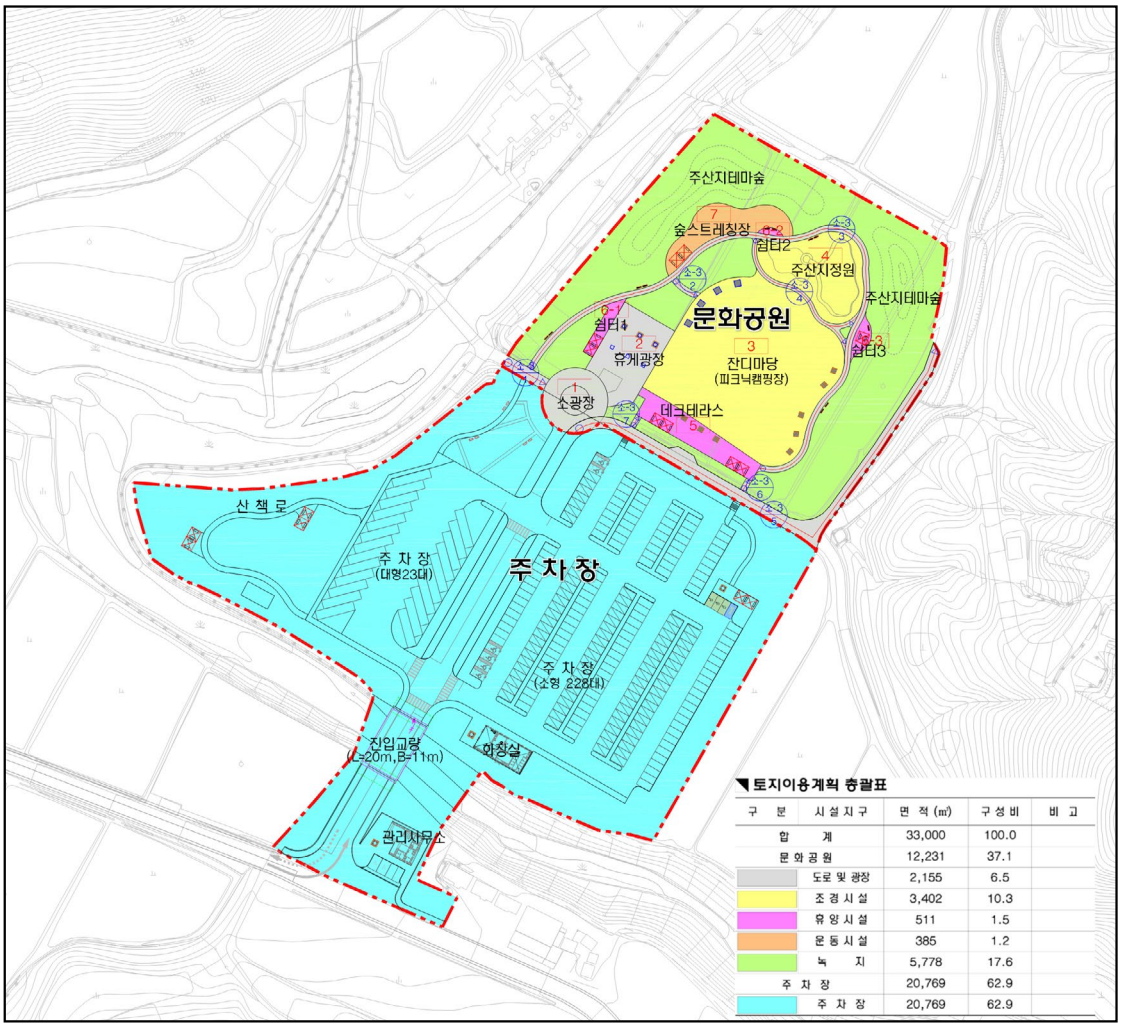
○이용안전과 원활한 이용을 위해 대형, 소형을 분리하여 배치하고, 장애인주차, 확장형주차, 전기충전 등 관련법과 기준, 생활편의 준수

○주변의 토지이용, 위치, 기능상의 배분과 연계성을 감안하여 진입도로를 계획

〈 토지이용계획 〉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지역개발사업구역	**33,000**	**100.0**	
문 화 공 원	12,231	37.1	(공원 시설율 53%)
도로 및 광장	2,155	6.5	
조 경 시 설	3,402	10.3	
휴 양 시 설	511	1.5	
운 동 시 설	385	1.2	
기타시설(녹지)	5,778	17.6	
주 차 장	**20,769**	**62.9**	
주 차 장	20,769	62.9	(녹지면적:8,682㎡) 관리사무소, 화장실 포함

〈 토 지 이 용 계 획 도 〉



6)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7)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가) 도로계획

○ 기존의 주산지 진입도로를 정비하고, 대상지로 분기하여 진입하는 왕복 2차로 운영

(주차장시설내 도로 폭 8~10m)

나) 상 · 하수도 계획

(1) 상수도계획

○ 주산지휴게소까지 인입되어 있는 상수관로에서 분기인입하여 이용하며, 향후 추가적인 관광시설 확충시에는 심정과 배수지를 개발하여 급수원으로 이용

(2) 하수도계획

○ 대상지를 처리구역에 포함한 부동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이 공사중(2020년 준공)이며, 대상지내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전량이송하여 처리

8)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가) 재원조달계획

○ 경상북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사업으로 국비 60억원 지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재원조달계획		연도별 투자계획				
		국비	지방비	2017	2018	2019	2020	2021
총사업비	6,000	6,000	-	600	1,400	500	600	2,900

9) 보건의료 · 교육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 해당사항 없음

10)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

가) 보상계획

○ 사업면적은 33,000㎡로 국유지가 2,703㎡(8.2%)이며, 군유지 30,297㎡(91.8%)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유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무상귀속 또는 매수하여 사업 시행

나) 조성토지의 공급계획

○ 조성된 토지 및 시설은 사업계획에 따라 지자체(청송군)에 귀속

11)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가) 별첨 세목조서 참조

12)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비용부담계획

○ 해당사항 없음

13) 사업성에 관한 사항

○ 년 평균 40만명 이상이 찾는 주산지 및 절골계곡은 청송군 방문객의 3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완공이후 방문객이 폭발적으로 증가 추세임.

○ 방문객과 지역주민에게 이용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며, 청송 고유 콘텐츠를 접목한 관광인프라 시설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14)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

가) 주민의견 청취

○ 공람기간 : 2020. 2. 4.~ 2. 21

○ 주민의견 : 의견없음

■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1) 시행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소재지

가) 명 칭

○ 청송군

나) 성 명

○ 청송군수

다) 소재지

○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51

2) 지역개발사업의 명칭, 위치 및 목적

가) 명 칭

○ 청송 주산지테마파크 조성사업

나) 위 치 :

○ 경상북도 청송군 주왕산면 주산지리 112-1번지 일원

다) 목 적 :

○ 아름다운 자연경관 지닌 주산지와 주왕산국립공원을 향유할 수 있는 관광 인프라를 확충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관광편의 및 기반시설 마련으로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며 지역관광 활성화에 이바지 함

3) 지역개발사업의 면적 및 시행기간

가) 면 적 :

○ 33,000㎡

나) 사업시행기간

○ 2017년 ~ 2021년(5년)

4)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에 관한 사항 제8항과 같음

■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1)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 청송군수

나) 주 소 :

○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51

2) 시업의 명칭 · 목적,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사업 시행기간

가) 명 칭 :

○ 청송 주산지테마파크 조성사업

나) 목 적 :

○ 아름다운 자연경관 지닌 주산지와 주왕산국립공원을 향유할 수 있는 관광 인프라를 확충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관광편의 및 기반시설 마련으로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며 지역관광 활성화에 이바지 함

다) 위 치 :

○ 경상북도 청송군 주왕산면 주산지리 112-1번지 일원

라) 면 적 :

○ 33,000㎡

마) 사업시행기간 :

○ 2017~2021년

3)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 게재생략(관련도서 참조)

4)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 게재생략(관련도서 참조)

5) 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에 관한 사항 제8항과 같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관한사항 제11항과 같음

7) 지형도면 및 관련도서 열람방법

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나) 이해관계인은 아래 장소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 경상북도 도시재생과(☎054-880-3947)

○ 청송군 관광정책과(☎054-870-6239)

[별 첨1]

편입토지조서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지적면적	편입면적		
합 계				203,134	33,000		
1	주왕산면 주산리지	110	답	3,404	3,404	군유지	
2	주왕산면 주산리지	111	답	2,126	2,126	군유지	
3	주왕산면 주산리지	112	답	1,893	1,893	군유지	
4	주왕산면 주산리지	113	답	1,725	1,725	군유지	
5	주왕산면 주산리지	116	구	2,264	358	국유지	
6	주왕산면 주산리지	110-2	답	1,723	1,723	군유지	
7	주왕산면 주산리지	110-3	답	1,419	1,419	군유지	
8	주왕산면 주산리지	110-4	답	2,975	2,975	군유지	
9	주왕산면 주산리지	110-5	답	1,356	1,356	군유지	
10	주왕산면 주산리지	111-1	답	1,019	1,019	군유지	
11	주왕산면 주산리지	111-2	답	2,304	2,304	군유지	
12	주왕산면 주산리지	111-3	답	1,594	1,594	군유지	
13	주왕산면 주산리지	112-1	답	1,715	1,715	군유지	
14	주왕산면 주산리지	112-2	답	1,680	1,680	군유지	
15	주왕산면 주산리지	112-3	답	1,736	1,736	군유지	
16	주왕산면 주산리지	113-1	답	1,945	1,945	군유지	
17	주왕산면 주산리지	114-1	도	370	370	국유지	
18	주왕산면 주산리지	114-2	도	1,608	689	국유지	
19	주왕산면 주산리지	114-3	도	753	152	국유지	
20	주왕산면 주산리지	1597-34	천	224	224	국유지	
21	주왕산면 주산리지	1597-35	천	34	34	국유지	
22	주왕산면 주산리지	1597-9	천	194,584	876	국유지	
23	주왕산면 주산리지	186-8	전	1,683	1,683	군유지	

[별 첨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의제처리 사항**

1)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교통시설(주차장)

■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주차장	청송군 주산면 주산지리 일원		증)20,769	20,769	-	

■ 주차장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변 경 사 유
-	주차장	▪ 주차장(20,769㎡) 신설	▪ 주산지 및 주왕산 방문객들과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서, 이용과 접근성을 높이고,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도록 계획하여 관광활성화 기여하고자 함

나) 공간시설(문화공원)

■ 문화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공원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주산지 테마파크	문화공원	청송군 주산면 주산지리 일원		증)12,231	12,231	-	

■ 문화공원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결 정 내 용	변 경 사 유
–	문화공원	▪문화공원(12,231㎡)신설	▪ 주왕산 국립공원, 주산지, 낙동정맥을 비롯한 청송군만의 천혜의 생태환경자원을 활용한 주산지 테마파크를 개발하고 문화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주왕산 관광의 거점공간이자 차별화된 관광자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공원조성계획 결정 조서

가) 공원조성계획 총괄표

■ 시설계획 총괄표

시설구분		시설내용	시설면적(㎡)				비고
			부지		건축		
			면 적	구성비(%)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12,231	100.0	–	–	
문화공원	시 설 면 적		6,453	52.8	–	–	
	도로 및 광장	도로, 소광장, 휴게광장	2,155	17.7	–	–	
	조경시설	잔디마당, 주산지정원	3,402	27.8	–	–	
	휴양시설	데크테라스, 쉼터1, 쉼터2, 쉼터3	511	4.2	–	–	
	운동시설	숲스트레칭장	385	3.1	–	–	
	녹지 및 기타		5,778	47.2	–	–	

■ 시설결정 조서

구 분		도면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건축규모(㎡)		비 고
						건축면적	연면적	
총 합 계					12,231			
시설 합계					6,453			
문화공원	도로 및 광장	소 계			2,155	–	–	
		–	도 로	–	1,264	–	–	
		1	소광장	주산지리 114-2	343	–	–	
		2	휴게광장	주산지리 110	548	–	–	
	조경시설	소 계		–	3,402	–	–	
		3	잔디마당	주산지리 110-3	2,685	–	–	
		4	주산지정원	주산지리 110-4	717	–	–	
	휴양시설	소 계		–	511	–	–	
		5	데크테라스	주산지리 110-2	361	–	–	
		6-1	쉼터1	주산지리 110	77	–	–	
		6-2	쉼터2	주산지리 110-2	16	–	–	
		6-3	쉼터3	주산지리 110-4	51	–	–	
	운동시설	소 계		–	385	–	–	
		7	숲스트레칭장	주산지리 110	385	–	–	
	녹지	소 계		–	5,778	–	–	
		–	녹지	–	5,778	–	–	

■ 도로시설 결정조서

▣ 도로조서 총괄

구 분		노 선 수(개)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비 고
합 계		7	1.5 ~ 4.0	482	1,264	
도로	진 입 로	2	3.0~4.0	182	694	
	연 결 로	5	1.5 ~ 2.0	300	570	

▣ 도로 결정 세부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 점	종 점	비고
	합 계	7개 노선			482	1,264				
신설	소로	3	1	4.0	16	63	진입로	구역경계	소광장	
신설	소로	3	2	2.0	10	20	연결로	소3-3	잔디마당	
신설	소로	3	3	2.0	220	440	연결로	데크테라스	소3-1	
신설	소로	3	4	1.5	62	94	연결로	소3-3	소3-3	
신설	소로	3	5	3~4	166	631	진입로	소광장	진입부	
신설	소로	3	6	2.0	4	8	연결로	소3-5	데크테라스	
신설	소로	3	7	2.0	4	8	연결로	소3-5	데크테라스	

3) 도시계획시설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 :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내용과 동일함에 따라 생략

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등 : 게재생략

경상북도 고시 제2021- 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등 고시

「국도59호선 문경 존도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를 위해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변경) 및 같은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의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4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구역결정 (변경)이유
당초	국도	59호선	국도59호선 (광양~양양)	문경시 산양면 존도리	대상리 641-11	불암리 295-8	문경시 산양면 존도리	5.238	
변경	국도	59호선	국도59호선 (광양~양양)	문경시 산양면 존도리	대상리 641-11	불암리 295-8	문경시 산양면 존도리	5.209	문경 존도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에 따른 일부구간 선형변경

2. 접도구역의 지정 내용

도로의 종류	국도	노선번호	59호선	노선명	국도59호선 (광양~양양)
접도구역 또는 위치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ㅇ 시점 : 대상리 641-11 종점 : 불암리 295-8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내용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3	9~70	주간선 도로	5,238	대상리 641-11	불암리 295-8	일반 도로	-	경고553 2010.12.6.	
변경	소로	2	3	9~70	주간선 도로	5,209	대상리 641-11	불암리 295-8	일반 도로	-		일부 선형 변경

4.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사유

○ 국도59호선 문경 존도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에 따른 변경

○ 도로선형개량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5. 사업시행기간

○ 국도 59호선 문경 존도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 2021. 03. ~ 2022.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비고
	시군	읍면	리					성명	주소	
						15,787	7,367			
1	문경	산양	존도	산8-1	도	4,518	113	경상북도		
2	〃	〃	〃	산10-3	임	72	72	이재희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동 1382 삼주타운 101-1405	
3	〃	〃	〃	374-2	도	63	48	국(국토 교통부)		
4	〃	〃	〃	374-3	도	29	29	경상북도		
5	〃	〃	〃	374-4	전	479	479	유기수 외2인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306, 105동 1802호	
6	〃	〃	〃	737	구	754	141	국(농림축산 식품부)		
7	〃	〃	〃	368-2	도	763	39	국(국토 교통부)		
8	〃	〃	〃	375-1	장	76	76	점촌위탁 영농합자회사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금천로 188-5	
9	〃	〃	〃	369-4	장	3,041	3,041	점촌위탁 영농합자회사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금천로 188-5	
10	〃	〃	〃	367-5	도	1,223	960	경상 북도		
11	〃	〃	〃	736	도	674	674	국(국토 교통부)		
12	〃	〃	〃	366-1	전	107	107	엄규진	문경시 호서로 137-1(흥덕동)	
13	〃	〃	〃	369-2	도	112	5	국(국토 교통부)		
14	〃	〃	〃	735	구	387	14	국(농림축산 식품부)		
15	〃	〃	〃	산13-2	도	660	104	경상 북도		
16	〃	〃	〃	367-3	전	472	472	김성식	대전 대덕구 오정동 315-5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비고
	시군	읍면	리					성명	주소	
17	〃	〃	〃	367-2	도	288	288	국(국토 교통부)		
18	〃	〃	〃	367-4	도	319	36	경상 북도		
19	〃	〃	〃	산14-2	임	72	72	김홍배	점촌읍 점촌리 454-4	
20	〃	〃	〃	산14-3	임	96	96	김홍배	점촌읍 점촌리 454-4	
21	〃	〃	〃	산14-1	도	193	140	경상 북도		
22	〃	〃	〃	산27	도	297	133	국(국토 교통부)		
23	〃	〃	〃	산13-3	도	948	84	경상 북도		
24	〃	〃	〃	366	전	144	144	엄규진	문경시 호서로 137-1(흥덕동)	

7.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열람기간 및 열람 : 열람장소에 비치

○ 공람기간 : 사업기간 내

○ 공람장소 : 경상북도북부건설사업소(054-850-3263)

경상북도 도로철도과(054-880-3989)

※ 첨부서류 : 1천5백분의 1 지형도(생략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서비스(http://luris.molit.go.kr)열람이 가능하며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별도 도면 게재는 생략합니다.

◈◈◈

경상북도 공고 제2021-2호

도로공사 시행허가(변경) 내용공고

「도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공사시행에 대한 허가(변경)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4일

경 상 북 도 지 사

도로의 종류	지방도	노 선 명	지방도924호선 (점촌~와룡)
공사의 종류	중앙선 도담 ~ 영천 복선전철 제5공구 노반신설공사에 따른 지방도 이설공사		
공 사 구 간	안동시 서후면 금계리 247-1 ~ 교리 15-1번지 일원 (L=0.33㎞)		
시 행 장 소	안동시 서후면 금계리, 교리 일원		
목적 및 사유	중앙선 도담 ~ 영천 제5공구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비관리청 도로공사 기간 연장		
착 수 일	2016년 8월	준공예정일	(당초)2020년 12월 31일 (변경)2021년 6월 30일

경상북도 공고 제2021 - 4호

경상북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운영계획 공고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동법시행령 제20조의7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15,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경상북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4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지정운영 대상시설 : 「경상북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경산 소재)

※ 관할지역 : 경북 남부권(경산, 영천, 청도, 군위, 칠곡, 고령)

2.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5년

3. 공고기간 : 2020. 1. 4. ~ 2021. 1. 18.(15일간)

4. 신청자격

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나. 노인복지법시행령 제20조의7에서 규정한 설치기준에 적합한 법인

(사무공간 및 장비 등 시설 수탁법인 부담)

다. 공고일 현재 경상북도에 법인 소재지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

5. 시설 · 인력기준 : 개소 전까지 충족

가. 시설기준 : 사무실(긴급전화 설치), 프로그램 운영실(상담, 교육을 위한 구조와 설비 갖출 것)

나. 인력기준 : 8명(기관장 1명, 상담원 7명)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5 및 2020년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자격기준 충족(기관장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 겸직 금지)

6. 주요사업

가. 노인학대 신고전화 운영, 사례접수 및 현장조사

나. 노인학대 관련 대상 상담, 관련 기록 · 보관

다. 노인학대 예방 · 재발 교육, 홍보

라. 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및 사례회의 운영

마.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도지사 위탁사업 수행 등

7. 선정방법 :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 선정

가. 노인보호전문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선정

나. 심의일정 개별 통보

다. 심사진행 : 사업계획 발표 및 면접

※ 적격선정법인(심의결과 60점 초과) 없을 시 수탁기관 모집 재공고

라. 선정결과 도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8. 심사항목

가. 법인의 공신력 및 회계 투명성, 재정부담능력, 노인복지업무 수행실적

나. 사업계획의 적합성, 적정성, 전문성, 노인인권 보호 및 학대예방 실적 등

9. 총 사업비 : 355백만 원(국비 177.5, 도비 177.5)

10. 신청서 제출

가. 기 간 : 2021. 1. 4 . ~ 2021. 1. 18.(18:00까지)

나. 접 수 처 : 경상북도 어르신복지과(접수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다. 방 법 : 어르신복지과에 직접 제출

(우편 및 택배접수 불가, 제출이후 내용변경 불가)

11. 신청 서류 (각 10부 제출)

① 노인보호전문기관 수탁운영신청서 및 첨부서류

② 법인정관

③ 법인등기부등본

④ 노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③ 공신력 및 재정력 확인서류(법인현황, 회계 및 재산 · 부채 현황 증빙서류)

※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 동산(현금)의 경우 잔고증명 등 법인의 목적사업 및 수익용 기본재산 관련 증빙서류 첨부

12.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나. 신청서식 및 사업안내는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에 게시함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어르신복지과 (☎ 054-880-37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공고 제2021-5호

측량업 등록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4일

경 상 북 도 지 사

상 호 (대표자)	업 종 (사업자번호)	등록번호	소 재 지	등록일
㈜지오스카이 (반성용)	지적측량 (489-86-01832)	02-000367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69. 2층	2020.12.31.

◈◈◈

경주시 고시 제2021-1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중로1류 8호선(일부구간))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안)

경주시 외동읍 석계리 1440-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1류 8호선(일부구간)) 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4일

경 주 시 장

1. 사업의 위치 (변경없음)

○ 경주시 외동읍 석계리 1440-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가. 종 류 : 경주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 도로)사업

나. 명 칭 : 문산2일반산업단지 지구외 준용구간 도시계획도로 중로 1류 8호선(일부구간) 개설사업

3. 사업의 규모 (변경없음)

가. 시행면적 : A = 28,805㎡(법면(도로구역))포함

나. 중로1류 8호선(일부구간) : B = 20.0m, L = 1,225m

※ 결정내용 : B = 20.0m, L = 4,297m(중로1류 8호선)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가. 성명(법인명) : (주)씨앤디산업 대표이사 이 동 범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86(진장동) 3층

5. 사업기간 (변경)

가. 기정 : 인가일로부터 ~ 2020년 12월 31일

나. 변경 : 인가일로부터 ~ 2021년 04월 30일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변경없음)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권리		비고
						주 소	성 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31,186	28,805					
필지수				166필지						
1	외동읍 석계리	578-1	답	203	203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86 (진장동)	주식회사 씨앤디산업			수탁자: 경남은행
2	외동읍 석계리	578-2	답	294	294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86 (진장동)	주식회사 씨앤디산업			수탁자: 경남은행
3	외동읍 석계리	578-3	제	54	54		국(건설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권리		비고
						주 소	성 명	권리명	권리자	
4	외동읍 석계리	578-4	제	149	149		국 (건설부)			
5	외동읍 석계리	578-5	답	116	116		경주시			
6	외동읍 석계리	578-9	답	5	5		경주시			
7	외동읍 석계리	578-10	답	100	100		경주시			
8	외동읍 석계리	578-6	답	311	311		경주시			
9	외동읍 석계리	578-11	답	25	25		경주시			
10	외동읍 석계리	578-12	답	30	30		경주시			
11	외동읍 석계리	578-13	답	87	87		경주시			
12	외동읍 석계리	579	답	149	149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86 (진장동)	주식회사 씨앤디산업			수탁자: 경남은행
13	외동읍 석계리	579-1	답	76	76		경주시			
14	외동읍 석계리	579-3	답	45	45		경주시			
15	외동읍 석계리	580	답	110	110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86 (진장동)	주식회사 씨앤디산업			수탁자: 경남은행
16	외동읍 석계리	580-1	답	35	35		경주시			
17	외동읍 석계리	580-3	답	55	55		경주시			
18	외동읍 석계리	582-3	답	19	19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86 (진장동)	주식회사 씨앤디산업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권리		비고
						주 소	성 명	권리명	권리자	
19	외동읍 석계리	582-4	답	132	132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86 (진장동)	주식회사 씨앤디산업			수탁자: 경남은행
20	외동읍 석계리	582-6	답	10	10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86 (진장동)	주식회사 씨앤디산업			
21	외동읍 석계리	582-7	답	21	21		경주시			
22	외동읍 석계리	582-10	답	69	69		경주시			
23	외동읍 석계리	583	천	73	73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86 (진장동)	주식회사 씨앤디산업			수탁자: 경남은행
24	외동읍 석계리	583-1	제	165	165		국(건설부)			
25	외동읍 석계리	583-2	천	81	81		경주시			
26	외동읍 석계리	583-4	천	86	86		경주시			
27	외동읍 석계리	584	제	231	231		국(건설부)			
28	외동읍 석계리	584-1	천	29	29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86 (진장동)	주식회사 씨앤디산업			수탁자: 경남은행
29	외동읍 석계리	585	답	117	117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86 (진장동)	주식회사 씨앤디산업			수탁자: 경남은행
30	외동읍 석계리	585-1	제	30	30		국(건설부)			
31	외동읍 석계리	585-2	제	36	36		국(건설부)			
32	외동읍 석계리	585-3	답	260	260		경주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권리		비고
						주 소	성 명	권리명	권리자	
33	외동읍 석계리	585-6	답	4	4		경주시			
34	외동읍 석계리	585-7	답	206	206		경주시			
35	외동읍 석계리	585-8	답	30	30		경주시			
36	외동읍 석계리	591	답	83	83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86 (진장동)	주식회사 씨앤디산업			수탁자: 경남은행
37	외동읍 석계리	591-1	제	218	218		국(건설부)			
38	외동읍 석계리	591-2	제	36	36		국(건설부)			
39	외동읍 석계리	591-3	답	370	370		경주시			
40	외동읍 석계리	591-7	답	65	65		경주시			
41	외동읍 석계리	591-4	답	1	1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86 (진장동)	주식회사 씨앤디산업			수탁자: 경남은행
42	외동읍 석계리	592	답	110	110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86 (진장동)	주식회사 씨앤디산업			수탁자: 경남은행
43	외동읍 석계리	592-6	제	484	484		국(건설부)			
44	외동읍 석계리	592-3	답	262	262		경주시			
45	외동읍 석계리	592-7	답	22	22		경주시			
46	외동읍 석계리	593	답	111	111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86 (진장동)	주식회사 씨앤디산업			수탁자: 경남은행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권리		비고
						주 소	성 명	권리명	권리자	
47	외동읍 석계리	593-4	제	177	177		국(건설부)			
48	외동읍 석계리	593-2	답	472	472		경주시			
49	외동읍 석계리	593-5	답	74	74		경주시			
50	외동읍 석계리	594-1	전	110	110		경주시			
51	외동읍 석계리	594-3	전	6	6		경주시			
52	외동읍 석계리	628	답	111	111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86 (진장동)	주식회사 씨앤디산업			수탁자: 경남은행
53	외동읍 석계리	628-2	답	37	37		경주시			
54	외동읍 석계리	629-2	답	41	41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86 (진장동)	주식회사 씨앤디산업			수탁자: 경남은행
55	외동읍 석계리	629-3	답	380	380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86 (진장동)	주식회사 씨앤디산업			수탁자: 경남은행
56	외동읍 석계리	629-4	전	60	60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86 (진장동)	주식회사 씨앤디산업			수탁자: 경남은행
57	외동읍 석계리	629-5	도	26	26		월성군			
58	외동읍 석계리	629-6	답	76	76		경주군			
59	외동읍 석계리	629-7	전	1	1		경주군			
60	외동읍 석계리	629-8	답	64	64		경주시			
61	외동읍 석계리	629-14	답	308	308		경주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권리		비고
						주 소	성 명	권리명	권리자	
62	외동읍 석계리	629-9	답	4	4		경주시			
63	외동읍 석계리	629-11	답	57	57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86 (진장동)	주식회사 씨앤디산업			수탁자: 경남은행
64	외동읍 석계리	1371-1	답	56	56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86 (진장동)	주식회사 씨앤디산업			
65	외동읍 석계리	1371-2	구	96	96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86 (진장동)	주식회사 씨앤디산업			
66	외동읍 석계리	1372-1	답	595	595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86 (진장동)	주식회사 씨앤디산업			수탁자: 경남은행
67	외동읍 석계리	1372-2	도	228	228		월성군			
68	외동읍 석계리	1372-3	답	287	287		경주군			
69	외동읍 석계리	1372-5	답	50	50		경주군			
70	외동읍 석계리	1372-6	답	1	1		경주군			
71	외동읍 석계리	1373-1	답	691	691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86 (진장동)	주식회사 씨앤디산업			수탁자: 경남은행
72	외동읍 석계리	1373-2	도	53	53		월성군			
73	외동읍 석계리	1373-3	도	69	69		월성군			
74	외동읍 석계리	1373-4	답	827	827		경주군			
75	외동읍 석계리	1373-6	답	118	118		경주군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권리		비고
						주 소	성 명	권리명	권리자	
76	외동읍 석계리	1373-7	답	40	40		경주군			
77	외동읍 석계리	1382-2	도	268	268		월성군			
78	외동읍 석계리	1382-3	답	203	203		경주군			
79	외동읍 석계리	1394-9	도	159	159		월성군			
80	외동읍 석계리	1394-10	도	89	89		월성군			
81	외동읍 석계리	1394-11	도	13	13		월성군			
82	외동읍 석계리	1394-12	도	13	13		월성군			
83	외동읍 석계리	1394-13	도	86	86		월성군			
84	외동읍 석계리	1394-14	묘	1,388	1,388		경주군			
85	외동읍 석계리	1394-15	답	79	79		경주군			
86	외동읍 석계리	1394-16	답	71	71		경주군			
87	외동읍 석계리	1394-17	답	560	560		경주군			
88	외동읍 석계리	1394-30	답	61	61		경주군			
89	외동읍 석계리	1421-2	도	17	17		월성군			
90	외동읍 석계리	1421-3	답	281	281		경주군			
91	외동읍 석계리	1422-1	답	278	278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86 (진장동)	주식회사 씨앤디산업			수탁자: 경남은행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권리		비고
						주 소	성 명	권리명	권리자	
92	외동읍 석계리	1422-2	도	231	231		월성군			
93	외동읍 석계리	1422-4	답	246	246		경주군			
94	외동읍 석계리	1422-7	답	5	5		경주군			
95	외동읍 석계리	1422-5	답	100	100		경주군			
96	외동읍 석계리	1423	답	4	4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86 (진장동)	주식회사 씨앤디 산업			수탁자: 경남은행
97	외동읍 석계리	1424-1	답	348	348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86 (진장동)	주식회사 씨앤디 산업	근저당권 지상권	외동농업협동조합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입실 시장길15)	
98	외동읍 석계리	1424-2	도	83	83		월성군			
99	외동읍 석계리	1424-3	답	254	254		경주군			
100	외동읍 석계리	1424-5	답	29	29		경주군			
101	외동읍 석계리	1427	묘	227	227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86 (진장동)	주식회사 씨앤디 산업	근저당권 지상권	외동농업협동조합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입실 시장길15)	
102	외동읍 석계리	1427-1	묘	47	47		경주군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권리		비고
						주 소	성 명	권리명	권리자	
103	외동읍 석계리	1427-2	대	8	8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86 (진장동)	주식회사 씨앤디 산업			수탁자: 경남은행
104	외동읍 석계리	1427-3	도	5	5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86 (진장동)	주식회사 씨앤디 산업	근저당권 지상권	외동농업협동조합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입실 시장길15)	
105	외동읍 석계리	1428-2	도	76	76		월성군			
106	외동읍 석계리	1428-3	도	138	138		월성군			
107	외동읍 석계리	1428-5	도	4	4		월성군			
108	외동읍 석계리	1428-4	답	563	563		경주군			
109	외동읍 석계리	1429-2	도	112	112		월성군			
110	외동읍 석계리	1429-3	답	194	194		경주군			
111	외동읍 석계리	1430-2	도	56	56		월성군			
112	외동읍 석계리	1430-3	답	47	47		경주군			
113	외동읍 석계리	1430-4	답	53	53		경주군			
114	외동읍 석계리	1431-2	도	122	122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86 (진장동)	주식회사 씨앤디 산업			
115	외동읍 석계리	1431-3	답	40	40		월성군			
116	외동읍 석계리	1431-4	답	20	20		경주군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권리		비고
						주 소	성 명	권리명	권리자	
117	외동읍 석계리	1434-2	도	33	33		월성군			
118	외동읍 석계리	1434-3	답	53	53		경주군			
119	외동읍 석계리	1435-1	답	615	615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86 (진장동)	주식회사 씨앤디 산업	근저당권 지상권	외동농업협동조합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입실 시장길15)	
120	외동읍 석계리	1435-2	도	129	129		월성군			
121	외동읍 석계리	1435-3	답	124	124		경주군			
122	외동읍 석계리	1436-1	답	53	53		경주시			
123	외동읍 석계리	1436-3	답	13	13		경주시			
124	외동읍 석계리	1436-2	도	89	89		월성군			
125	외동읍 석계리	1437-1	답	327	327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86 (진장동)	주식회사 씨앤디 산업			수탁자: 경남은행
126	외동읍 석계리	1437-2	도	129	129		경주군			
127	외동읍 석계리	1437-3	답	200	200		경주군			
128	외동읍 석계리	1438-1	답	282	282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86 (진장동)	주식회사 씨앤디 산업			수탁자: 경남은행
129	외동읍 석계리	1438-2	도	84	84		경주군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권리		비고
						주 소	성 명	권리명	권리자	
130	외동읍 석계리	1438-5	도	15	15		경주군			
131	외동읍 석계리	1438-3	답	44	44		경주군			
132	외동읍 석계리	1438-6	답	68	68		경주군			
133	외동읍 석계리	1440-1	답	1,085	1,085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86 (진장동)	주식회사 씨앤디 산업			수탁자: 경남은행
134	외동읍 석계리	1440-2	도	215	215		월성군			
135	외동읍 석계리	1440-3	답	682	682		경주군			
136	외동읍 석계리	1441-1	답	40	40		경주시			
137	외동읍 석계리	1441-2	도	142	142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86 (진장동)	주식회사 씨앤디 산업			
138	외동읍 석계리	1441-4	답	40	40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86 (진장동)	주식회사 씨앤디 산업			
139	외동읍 석계리	1442	임	97	97		경주시			
140	외동읍 석계리	1442-1	제	37	37		국 (건설부)			
141	외동읍 석계리	1442-2	임	179	179		경주시			
142	외동읍 석계리	1442-4	임	229	229		경주시			
143	외동읍 석계리	1443-1	임	23	23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86 (진장동)	주식회사 씨앤디 산업			
144	외동읍 석계리	1443-2	도	23	23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86 (진장동)	주식회사 씨앤디 산업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권리		비고
						주 소	성 명	권리명	권리자	
145	외동읍 석계리	1444-2	도	50	50		월성군			
146	외동읍 석계리	1444-3	답	155	155		경주군			
147	외동읍 석계리	1444-4	답	4	4		경주군			
148	외동읍 석계리	1880-303	제	394	394		국 (건설부)			
149	외동읍 석계리	1880-304	제	2,408	2,408		국 (건설부)			
150	외동읍 석계리	1880-305	제	616	616		국 (건설부)			
151	외동읍 석계리	1880-106	제	2,488	107		국 (건설부)			
152	외동읍 석계리	1880-107	천	81	81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86 (진장동)	주식회사 씨앤디 산업			수탁자: 경남은행
153	외동읍 석계리	1880-108	천	218	218		경주시			
154	외동읍 석계리	1880-109	천	78	78		경주시			
155	외동읍 석계리	1880-251	천	376	376		경주시			
156	외동읍 석계리	1880-307	천	52	52		경주시			
157	외동읍 석계리	1880-308	천	69	69		경주시			
158	외동읍 석계리	1894	도	20	20		국(농림 수산부)			
159	외동읍 석계리	1896	도	69	69		국(농림 수산부)			
160	외동읍 석계리	1896-1	도	91	91		국(농림 수산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권리		비고
						주 소	성 명	권리명	권리자	
161	외동읍 석계리	1897-2	구	214	214		국(농림수산부)			
162	외동읍 석계리	1897-3	구	223	223		국(농림수산부)			
163	외동읍 석계리	1898-2	구	387	387		국(농림축산식품부)			
164	외동읍 석계리	1925-2	도	28	28		국(건설부)			
165	외동읍 석계리	1925-3	도	493	493		국(건설부)			
166	외동읍 석계리	1926	도	724	724		국(건설부)			

7. 관계도서는 경주시 기업지원과(☎054-779-626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안동시 고시 제2021 - 3호

안동 도시계획시설(공원:정상택지2공원)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안동시 고시 제2020-287호(2020.11.23.)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관내 정하동 299-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공원:정상택지2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규정에 의거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4일

안 동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 치: 경상북도 안동시 정하동 299-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명 칭 : 안동 정상택지2공원 재조성 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공원조성계획 결정 면적 : 2,360.50㎡

○ 사업시행 면적 : 2,360.50㎡

○ 시설개요

구 분		결 정 면 적		시 행 면 적(금회)		비고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총 계		2,360.50	100.00	2,360.50	100.00	
세부시설	소 계	1,242.39	52.63	1,242.39	52.63	
	도로 및 광장	742.27	31.45	742.27	31.45	
	휴양시설	24.60	1.04	24.60	1.04	
	운동시설	3.95	0.17	3.95	0.17	
	유희시설	458.27	19.41	458.27	19.41	
	관리시설	13.30	0.56	13.30	0.56	
녹지 및 기타		1,118.11	47.37	1,118.11	47.37	

○ 공사현황

■ 정비공사 : [철거]조합놀이대, 사과조형물 등 14종, [이설]등의자, 조경석 등 5종

■ 식재공사 : [이식]단풍나무, 배롱나무, 왕벚나무 등 1식 [신규] 느티나무, 단풍나무, 매화나무, 산수유, 왕벚나무, 팥배나무, 사철나무, 산철쭉, 회양목, 맥문동, 잔디, 바크 등 1식

■ 시설공사 : 모험놀이대, 다인용그네, 와이드미끄럼틀, 물놀이장 1식, 팔각파고라 1개

소, 그늘막 1개소, 벤치, 안내판 등

■포장공사 : 경화황토포장 564.49㎡, 탄성포장 334.35㎡, 인조화강석블럭 142.40㎡, 모래장 78.54㎡, 화강석경계석 135.0m 등

■우배수공사 : 통나무세족대, 집수정, PE연결관 74.0m, 맹암거 32.0m, 상수관설치 50.0m, 배수관설치 7.0m 등

■토 공 사 : 마운딩 1식, 토사반입 등

■전기통신공 : 보안등, CCTV 등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명륜동)

○ 성 명 : 안동시장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2021년 06월 30일

6.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	동	지번		공부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관계	
계					2,360.50	2,360.50						
1	안동시	정하동	299-2	공	2,360.50	2,360.50	공유지	안동시				

구미시 고시 제2021 - 1호

구미 도시계획시설(공원:꽃동산공원)사업 시행자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구미시 도량동 산24번지 일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의거 추진하는 구미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의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97조, 제10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4일

구 미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구미시 도량동 산24번지 일원 (변경없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꽃동산공원) 사업

○ 명 칭 : 구미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 공원결정면적 : 750,000㎡

○ 금회시행면적 : 688,860㎡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시행자 1 : 구미시장 /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 (변경없음)

나. 시행자 2

당 초	성 명	주식회사 서영디앤씨 대표 이상화, 이봉관
	주 소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75-1, 305호
변 경	**성 명**	지엠파크 주식회사 대표 이상화, 신영면
	주 소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75-1, 305호

5. 사업시행기간 : 2020년 6월 29일 ~ 2025년 12월 31일 (변경없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별첨

7. 기타 관련서류는 구미시 공원녹지과(054-480-5562)에 비치하고 있음.

[별 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변경없음)

번호	위치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구미시									
	동	지 번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5	원호리	산40-3	임	3,306	3,306	경산시 삼성현로 203, 웰리치성암 103동 405호 대표 이유태	성산O씨 정O공파종중			
6	원호리	산41	임	12,252	12,252	경산시 삼성현로 203, 웰리치성암 103동 405호 대표 이유태	성산O씨 정O공파종중			
7	원호리	산42-3	임	808	101		구미시			
8	원호리	산42-4	임	23,062	23,062	구미시 구미중앙로 302 (송정동 443-11)	선산O씨 원O파종중			
9	원호리	산42-5	임	513	17		구미시			
10	원호리	산102	구	449	449		국(농림수산부)			
11	원호리	산103	도	198	198		국(농림수산부)			
12	원호리	산104	구	177	177		국(농림수산부)			
13	원호리	산105	구	496	496		국(농림수산부)			
14	원호리	산106	도	660	660		국(건설교통부)			
15	원호리	392-2	전	132	132		구미시			
16	원호리	401	도	6,073	192		구미시			
17	원호리	413-2	전	17	17	구미시 구미중앙로 302 (송정동 443-11)	선산O씨 원O파종중			

번호	위치 구미시 동	위치 구미시 지번	지목	면적(㎡) 공부	면적(㎡) 편입	소유자 주소	소유자 성명	관계인 주소	관계인 성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8	원호리	416	대	388	388	경산시 삼성현로 203, 웰리치성암 103동 405호 대표 이유태	성산O씨 정O공파종중			
19	원호리	417	전	952	952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1356-3 메트로팔레스 109동 1007호	이O식	경산시 삼성현로 203, 웰리치성암 103동 405호 대표 이유태	성산O씨 정O공파종중	근저당권 설정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동 391 현대아파트 104동 805호	이O용			
20	원호리	417-1	전	529	529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1356-3 메트로팔레스 109동 1007호	이O식	경산시 삼성현로 203, 웰리치성암 103동 405호 대표 이유태	성산O씨정O공파종중	근저당권 설정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동 391 현대아파트 104동 805호	이O용			
21	원호리	418	전	1,136	1,136	구미시 고아읍 문장로 22길 40 201동1213호 (한누리 타운)	곽O희	구미시 형곡동로 107(형곡동)	구미O업 협O조합	근저당권 설정
						구미시 송정대로6길 13-6 102동 102호 (송정동 삼우아파트)	박O나			
22	원호리	419	전	493	493		경상북도(교육청)			
23	원호리	421	전	664	664		경상북도(교육청)			

번호	위치 구미시 동	위치 구미시 지번	지목	면적(㎡) 공부	면적(㎡) 편입	소유자 주소	소유자 성명	관계인 주소	관계인 성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4	원호리	518-2	구	116	116		국(농림 축산식품부)			
25	원호리	522	도	45	45		국(건설부)			
26	도량동	산24	임	118,035	115,917	경북 구미시 개화6길 11 (도량동 251-33) 대표 최성모	경주O씨윤O 후자공파종중			
27	도량동	산24-13	도	142	16		구미시			
28	도량동	산24-18	임	1,542	1,542	구미시 개화2길 25, (도량동)	최O모			
29	도량동	산25	임	2,380	2,380	경기도 오산시 양산로 460 109동 1803호(양산동 세마이-편한세상아파트)	배O현			
30	도량동	산26-1	임	34,157	33,513	대구광역시 달서구 야외음악당로 39 서길95 대표 김광조	선산O씨충O 위공해창 공파종중			
						구미시 고아읍 들성로 121 103동 1405호 구미원호푸르지오	김O문			
						대구광역시 수성구 천을로23길 31 103동 1403호 매호효성백년가약	강O순			

번호	위치 구미시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동	지번		공부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1	도량동	산26-7	도	362	24		구미시			
32	도량동	산26-8	도	514	68		구미시			
33	도량동	산27	임	33,100	33,100		구미시			
34	도량동	산27-4	임	15,411	15,343	구미시 고아읍 들성로 121 103동1405 (구미원호 푸르지오)	김O문			
						대구광역시 수성구 천으로23길 31 103동1403호 매호효성백년가약	강O순			
35	도량동	산28	임	3,435	3,435	구미시 고아읍 송림리 166-4 (구미시 고아읍 송평구 3길 31 대표 권오욱)	안동O씨 좌O 공파구미 송림소종중			
36	도량동	산28-3	임	652	591		구미시			
37	도량동	산29	임	22,206	20,902		구미시			
38	도량동	산30	임	8,247	8,247		구미시			
39	도량동	산31	임	8,114	8,114		구미시			
40	도량동	산31-2	임	2,873	2,873	서울시 성북구 아리랑로 75 107동 601호 돈암동 돈암코오롱 하늘채 아파트	송O근			
41	도량동	산32-1	임	10,936	10,91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247번길 15 117-203 (원천동)	김O기			

번호	위치 구미시 동	위치 구미시 지번	지목	면적(㎡) 공부	면적(㎡) 편입	소유자 주소	소유자 성명	관계인 주소	관계인 성명	관계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2	도량동	산32-2	임	8,766	8,766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중앙로45길 18, 101동 403호(신평동, 영무예다음아파트)	윤O란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576, 201동 1410호(자양동, 우성아파트)	박O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4로 46, 212동1402호	박O준			
43	도량동	산32-3	임	806	806	(식사동,위시티일산자이지단지)	정O용			
44	도량동	산32-4	임	694	694	경상북도 구미시 금오산로 182-4(남통동)	강O규			
45	도량동	산32-5	임	8,331	8,331	서울 용산구 한남동 729	장O태			
46	도량동	산32-6	임	12,996	12,996	구미시 형곡동 151-10 풍림아파트 202동 802호	변O환			
47	도량동	산32-7	임	12,694	12,694	구미시 원평동 310	이O우			
48	도량동	산32-9	임	2,242	2,242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중앙로45길 18, 101동 403호(신평동, 영무예다음아파트)	윤O란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576, 201동 1410호(자양동, 우성아파트)	박O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4로 46 212동 1402호 위시티일산자이2단지	박O준			

번호	위치 구미시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동	지번		공부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9	도량동	산32-10	도	4,073	4,073		구미시			
50	도량동	산32-12	임	2,675	2,675	구미시 도량동 산32-12	이O자			
						구미시 도량동 산32-12	최O란			
51	도량동	산32-17	임	624	62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247번길 15 117-203 (원천동)	김O기			
52	도량동	산32-18	도	498	13		구미시			
53	도량동	산32-21	도	26	17		구미시			
54	도량동	산32-22	임	6,612	6,61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남로4길 81, 106동 901호(신정동, 목동2차삼성 래미안아파트)	변O호			
						구미시 고아읍 숭선로 28-9 (항곡리 592)	변O환			
55	도량동	산33-1	임	83,445	83,44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달맞이길 43 2402호	김O수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 524 평택소사에스케이뷰 아파트 103동 604호	김O수			
56	도량동	산33-2	임	893	893	구미시 신비로 3길 32 (신평동 70-58)	김O수			
57	도량동	산33-3	수	766	766		구미시			
58	도량동	산33-7	구	8	8		구미시			
59	도량동	산33-8	구	105	105		구미시			

번호	위치 구미시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동	지 번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60	도량동	산34	임	2,380	2,380	대구광역시 남구 자유샛길 17-2 (대명동)	김O식			
61	도량동	산35	임	43,921	43,921	대구시 달서구 월곡로 171-101동 1002호 회장 이종억	벽진O씨 경은O 파종중			
62	도량동	산35-4	구	15	15		구미시			
63	도량동	산35-5	구	34	34		구미시			
64	도량동	산35-7	임	11,099	11,099	대구시 달서구 월곡로 171-101동 1002호 회장 이종억	벽진O씨 경O파종중			
65	도량동	산35-8	임	4,178	4,178	대구시 달서구 월곡로 171-101동 1002호 회장 이종억	벽진O씨 경O파종중			
66	도량동	산35-9	임	28,746	28,746	대구시 달서구 월곡로 171-101동 1002호 회장 이종억	벽진O씨 경O파종중			
67	도량동	산36	임	405	405	칠곡군 북삼면 오평2길 51 송석록 송덕현	여산O씨 정O공파인동문중			
68	도량동	산37	임	13,234	13,234	구미시 남통동 금오청구아파트 102동 1302호 회장 김정득	경주O씨 구O공파종친회			

번호	위치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구미시									
	동	지번		공부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69	도량동	산37-2	임	132	132	구미시 도량동 755-16	김O한			
						구미시 도량동 560-6	김O길			
						대구 중구 대봉동 28-24	김O희			
						구미시 도량동 541-1	김O식			
						구미시 도량동 639, 주공아파트 111동 308호	박O근			
						구미시 신평동 45-2	박O환			
						구미시 선산읍 동부동 310-1	박O한			
						구미시 신평동 150-6, 씨이동 309동	박O호			
						구미시 원평동 176-41	손O규			
						구미시 도량동 792-127	양O삼			
						구미시 도량동 639, 주공아파트 105동 303호	엄O철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847-15	오O남			
						구미시 원평동 517-33	윤O덕			
						서울 강동구 삼전동 50-13	윤O희			
						구미시 고아읍 송평구길 67	이O영			
						구미시 광평동 72-9	이O기			
						구미시 공단동 109, 주공아파트 213동 206호	이O천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72길 3	해O제O 주식회사	근저당권 설정

번호	위치 구미시 동	위치 구미시 지번	지목	면적(㎡) 공부	면적(㎡) 편입	소유자 주소	소유자 성명	관계인 주소	관계인 성명	관계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구미시 고아읍 송림리 50-2	이O욱			
						구미시 광평동 536-46	이O환			
						구미시 도량동 547-1	이O열	구미시 도량동 792-90	도O동 새O을 금고	근저당권 설정
						구미시 송정동 31-8	전O철			
						구미시 사곡동 339-24	최O화			
						구미시 도량동 267-8	최O수			
						구미시 도량동 639, 주공아파트 103동 105호	허O수			
70	도량동	산37-3	임	2,544	2,544	구미시 남통동 금오청구아파트 102동 1302호 회장 김정득	경주O씨 구O공파종친회			
71	도량동	산37-4	임	14,312	14,312	구미시 남통동 금오청구아파트 102동 1302호 회장 김정득	경주O씨 구O공파종친회			
72	도량동	산37-5	임	1,170	1,170	구미시 남통동 금오청구아파트 102동 1302호 회장 김정득	경주O씨 구O공파종친회			

번호	위치 구미시 동	위치 구미시 지번	지목	면적(㎡) 공부	면적(㎡) 편입	소유자 주소	소유자 성명	관계인 주소	관계인 성명	관계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73	도량동	산37-6	임	1,795	1,795	구미시 남통동 금오청구아파트 102동 1302호 회장 김정득	경주O씨 구O공파종친회			
74	도량동	산38	임	397	393	경상북도 구미시 지산1길 16-23(지산동)	최O욱			
75	도량동	산39	임	770	770	대구 북구 학정동로 7 부영아파트 104동 206호 회장 김미조	선산O씨 진O당공파종중			
76	도량동	산39-6	임	78	78		구미시			
77	도량동	산40-1	임	23,306	22,302		경상북도(교육감)			
78	도량동	산41	임	12,694	12,694	구미시 지산동39	김O철			
						서울 중구 신당동 304-366	김O옥			
79	도량동	산42	임	6,744	6,744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임곡로 43, 115동 506호(비산동, 그린빌주공아파트)	김O환			
						대구광역시 달서구 한실로 117, 303동 1102호(도원동, 대곡사계절타운)	김O해			
80	도량동	산43	임	31,339	29,896	대구광역시 달서구 선원로55길 60 썬하이츠103호 (용산동 570-2)	김O필	구미시 금오시장로1길 4 101호(원평동)	금O 새O을 금고	근저당권 설정
						대구광역시 달서구 와룡로15길 86, 106동309호 (본리동 백조아파트)	이O아			

번호	위치 구미시 동	위치 구미시 지번	지목	면적(㎡) 공부	면적(㎡) 편입	소유자 주소	소유자 성명	관계인 주소	관계인 성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81	도량동	산44	임	893	893		김O계			
82	도량동	산46	임	4,760	4,760		김O묵			
83	도량동	산47	임	9,124	8,979	구미시 송동로7안길 10-5 (도량동 188)	박O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로 88, 124동 1503호(잠실동, 레이크팰리스)	김O욱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1가길 11, 105동 2001호 (상도동, 상도파크자이)	김O연			
						구미시 선기로 7, 106동 908호 (남통동, 남통이편한세상)	김O원			
						경상북도 구미시 송동로 195(도량동)	김O재			
						구미시 고아읍 들성로 121 109604호 (구미원호푸르지오)	김O륜			
84	도량동	산48-5	임	3,719	3,657	구미시 송동로 7안길 10-14 대표 김익수	김해O씨 판O공파가락 세가송호종회			
85	도량동	산48-8	도	2,024	951		구미시			

번호	위치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구미시									
	동	지번		공부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86	도량동	산68	구	1,273	1,273		국(농림수산부)			
87	도량동	산87	구	435	334		국(건설교통부)			
88	도량동	산88	구	469	469		국(건설교통부)			
89	도량동	산89	구	1,072	1,072		국(건설교통부)			
90	도량동	산90	구	1,273	1,273		국(건설교통부)			
91	도량동	산91	구	268	268		국(건설교통부)			
92	도량동	산92	도	89	89		국(건설부)			
93	도량동	산94	구	938	938		국(건설교통부)			
94	도량동	산95	구	536	536		국(건설교통부)			
95	도량동	산96	구	745	745		국(건설부)			
96	도량동	산97	구	436	436		국(건설교통부)			
97	도량동	산98	구	73	73		국(농림수산부)			
98	도량동	산99	구	42	42		국(건설교통부)			
99	도량동	산100	구	111	111		국(건설교통부)			
100	도량동	산101	구	469	469		국(건설교통부)			
101	도량동	21	전	2,102	1,357	경상북도 구미시 선기로1길 21 102동 702호(남통동, 두산그린맨션)	김O환	구미시 선산읍 남문로 50	구O시 산O조합	근저당권 설정

번호	위치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구미시									
	동	지번		공부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02	도량동	45	전	191	191	대구 달서구 상화로 272 LH 대구경북지역본부 토지판매부	한국O지주O공사			
103	도량동	46	전	1,025	1,025	구미시 송동로7안길 10-5(도량동 199)	김O수			
104	도량동	47	전	1,342	1,342	구미시 도량동 216	김O채			
105	도량동	48	임	405	405	대구광역시 달서구 선원로55길 60 썬하이츠103호 (용산동 570-2)	김O필	구미시 금오 시장로1길 4, 101호 (원평동)	금O 새O을 금고	근저당권 설정
						대구광역시 달서구 와룡로15길 86, 106동309호(본리동 백조아파트)	이O아			
106	도량동	48-1	임	405	405	대구광역시 달서구 선원로55길 60 썬하이츠103호 (용산동 570-2)	김O필	구미시 금오 시장로1길 4, 101호 (원평동)	금O 새O을 금고	근저당권 설정
						대구광역시 달서구 와룡로15길 86, 106동 309호(본리동 백조아파트)	이O아			

번호	위치 구미시 동	위치 구미시 지번	지목	면적(㎡) 공부	면적(㎡) 편입	소유자 주소	소유자 성명	관계인 주소	관계인 성명	관계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07	도량동	49	전	2,294	2,294	구미시 송동로 7안길 10-14 (도량동 213-2)	김O찬			
						구미시 옥계북로 33 삼구트리니엔 101동 1403호	김O희			
						구미시 야은로 13길 6	김O숙			
						구미시 옥계동 640-2 대우아파트 102동1304호	김O익			
						구미시 남통동 선기로 3길 51 금오어울림 102동 804호	김O옥			
108	도량동	50	전	594	594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171번길 2-13(영주동)	성O태			
109	도량동	50-1	전	1,158	1,158	구미시 백산로 153 103동505호 (송정동,동양한신아파트)	장O용	구미시 형곡동로 107 (형곡동)	구미O업 협O조합	근저당권 설정
						구미시 신시로22길 3-6(송정동)	여O태			
110	도량동	54	전	195	195	경상북도 구미시 원남로 43-7(원평동)	김O자			
111	도량동	54-2	구	72	72		구미시			

번호	위치 구미시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동	지 번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12	도량동	62	답	83	83	대구 달서구 상화로 272 LH대구 경북지역본부 토지판매부	한국O지주O공사			
113	도량동	62-1	답	39	39		국(기획재정부)			
114	도량동	62-4	답	125	125	대구 달서구 상화로 272 LH대구 경북지역본부 토지판매부	한국O지주O공사			
115	도량동	63	공	1,343	1,343		구미시			
116	도량동	63-2	전	10	10		구미시			
117	도량동	65	전	198	198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59 비동 2002호 (두산동 대우트럼 프월드 수성)	이O순			
118	도량동	66	전	397	397	대구시 달서구 월곡로 171-101동 1002호 회장 이종억	벽진O씨 경O파종중			
119	도량동	160	전	1,164	1,164	구미시 송동로 70-25(도량동)	김O천			
120	도량동	161	전	1,465	1,465	구미시 송동로 154 파크맨션 101동 1107호	김O황			
						구미시 신시로 119 금오 어울림 포레1차 102동 1503호	김O수			
						구미시 봉곡서로 113-4	김O욱			
						구미시 구미중앙로 9길 45, 2층(원평2동 7-6)	이O아			

번호	위치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구미시									
	동	지번		공부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21	도량동	161-2	전	2	2	구미시 구미중앙로 9길 45, 2층 (원평2동 7-6)	이O아			
122	도량동	161-3	구	35	35		구미시			
123	도량동	162	임	635	635	구미시 도량동 191	김O영			
124	도량동	162-2	구	4	4		구미시			
125	도량동	163	답	416	416	구미시 야은로 365-9, 1층(도량동)	조O현			
126	도량동	164	전	356	356	구미시 송동로7길 29-2 (도량동)	김O자			
127	도량동	165	전	3,512	3,512	경상북도 구미시 송동로 68-5(도량동)	김O기			
128	도량동	165-2	구	52	52		구미시			
129	도량동	166	전	367	367	부산시 수영구 장대골로 31번길 3 503호 (광안동, 흑석파크)	조O희	구미시 송동로 154, 101동 605호 (도량동, 도량파크맨션)	조O현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130	도량동	167	전	1,369	1,36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달맞이길 43 2402호	김O수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 524 평택소사에스케이뷰아파트 103동 604호	김O수			

번호	위치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구미시									
	동	지번		공부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31	도량동	168	전	694	69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달맞이길 43 2402호	김O수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 524 평택소사에스 케이뷰아파트 103동 604호	김O수			
132	도량동	169	전	482	48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달맞이길 43 2402호	김O수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 524 평택소사 에스케이뷰아파트 103동 604호	김O수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동 1332 신 화맨션 101-502	김O수			
133	도량동	176-1	답	1	1	대구 달서구 상화로 272 LH 대구경북지역본부 토지판매부	한국O 지주O공사			
134	도량동	251-56	대	309	286	구미시 개화2길 25, (도량동)	최O모			
135	도량동	251-57	대	448	448	구미시 개화2길 25, (도량동)	최O모			
136	도량동	252	전	155	155	경상북도 구미시 야은로 371-1 B-102호 (도량동 274-2)	최O	경북 구미시 개화6길 11 대표 최성모	경주O씨 윤O후자 공파종중	가처분
						구미시 형곡로 162	최O모			
						구미시 개화2길 25, (도량동)	최O모			

번호	위치 구미시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동	지 번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37	도량동	253	전	1,230	1,230	구미시 개화4길 38 (도량동)	김O현			
138	도량동	254	답	1,242	1,242	구미시 개화7길 32 (도량동 254)	원O복			
139	도량동	254-1	답	1,228	1,228	구미시 개화4길 30 (도량동 254-1)	채O기			
140	도량동	254-2	답	128	128	구미시 개화4길 38 (도량동)	김O현			
						구미시 개화7길 32 (도량동 254)	원O복			
141	도량동	254-3	답	142	142	구미시 개화4길 30 (도량동 254-1)	채O기			
						구미시 개화4길 38 (도량동)	김O현			
						구미시 개화7길 32 (도량동 254)	원O복			
142	도량동	255-4	도	1,317	30		구미시			
143	도량동	255-5	전	356	356	구미시 비산동 28, 강변아파트 가동 106호	남O인			
						경기도 군포시 수리산로 40, 806동 502호 (산본동,수리아파트)	박O범			
144	도량동	255-7	전	250	250	구미시 비산동 28, 강변아파트 가동 106호	남O인			
						경기도 군포시 수리산로 40, 806동 502호 (산본동,수리아파트)	박O범			

번호	위치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구미시									
	동	지번		공부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45	도량동	255-13	전	328	328	경북 구미시 개화6길 11 (도량동 251-33)	최O모			
146	도량동	259-16	대	177	5	구미시 도량동 산 24-10	최O호			
147	도량동	531-4	대	143	143	구미시 문장로5길 32-5, 501호(도량동)	박O숙	구미시 금오시장로1길 4, 101호(원평동)	금O새O을 금고	근저당권 설정
148	도량동	536-6	대	49	49	경상북도 구미시 문장로5길 28-1(도량동)	김O교			
149	도량동	536-17	대	4	4	경주시 동성로12, 5동 105호(성건동, 보우아파트)	우O순			
150	도량동	539	대	187	28	구미시 문장로 7길 28 (도량동)	정O자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 (을지로2가) 강일지점	주식회사 국O은O	근저당권 설정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문성로 30, 110동 2301호 문성서희 스타힐스	한O준	근저당권 설정

번호	위치 구미시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동	지번		공부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51	도량동	541-14	대	16	16	경주시 동성로12, 5동 105호(성건동, 보우아파트)	이O원	경기 광주시 문화로 127 경기광주세무서	경O광주 세O서	압류
								경북 경주시 원화로 335 경주세무서	경O 세O서	압류
152	도량동	546-7	대	41	25		구미시			
153	도량동	549	대	172	1	구미시 구미중앙로7길 6-11 (원평2동 112-33번지)	김O순			
154	도량동	550	대	389	2	구미시 문장로7길 14 (도량동 550)	김O범			
155	도량동	552-2	대	183	4	경상북도 구미시 도량동 552-2	김O옥			
156	도량동	552-15	대	127	1	경북 구미시 도량동 552-15	이O조	구미시 송동로 68-15(도량동)	도O동 새O을금고	근저당권 설정
157	도량동	609-5	답	33	33		구미시			
158	도량동	611	답	799	702	구미시 도량동 611	백O학			
						구미시 도량동 611	김O근			
						구미시 문장로9길 24-1(도량동)	이O호			

번호	위치 구미시 동	위치 구미시 지번	지목	면적(㎡) 공부	면적(㎡) 편입	소유자 주소	소유자 성명	관계인 주소	관계인 성명	관계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58	도량동	611	답	799	702	구미시 문장로9길 23-1(도량동)	도O석			
						구미시 문장로9길 26-1(도량동)	최O모			
						구미시 수점로 24-22(선기동)	장O분	구미시 형곡동 262-1	천O구	가압류
								구미시 도량동 659 두산맨션 101-702	변O홍	가압류
						구미시 고아읍 문장로22길 40, 203동 1102호(미광한누리타운)	김O준			
						구미시 문장로9길8, 103동 102호(도량동, 마이홈빌라)	양O순			
159	도량동	611-1	대	146	17	구미시 도량동 611-1	최O순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동 146-6 (파머스 마켓지점)	구미O업 협O조합	근저당권 설정
160	도량동	611-7	대	196	53	구미시 문장로 9길 22-1 (도량동 611-7)	이O용			
161	도량동	611-10	대	170	44	경상북도 구미시 문장로 9길 20-3	김O정			
						경상북도 구미시 문장로 9길 20-3	김O욱			

번호	위치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구미시									
	동	지번		공부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62	도량동	611-11	대	172	2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165번길 35 509-302 (수내동 양지마을)	김O성			
163	도량동	611-21	답	9	2		윤O옥			
164	도량동	612-2	전	744	660	공원녹지과	구미시			
165	도량동	640	전	10	10	공원녹지과	구미시			
166	도량동	643	전	245	245	공원녹지과	구미시			
167	도량동	645	전	345	345	김천시 황금동 78-51	김O준			
167	도량동	645	전	345	345	공원녹지과	구미시			
168	도량동	656-3	답	9	9	구미시 도량동 656-3	신O식			
169	도량동	657-2	전	1,467	1,467	구미시 도량동 산32-12	이O자			
170	도량동	659-1	임	21	21	경기 양주시 고읍동 77 티.에스 푸른솔1차 아파트 106동 602호	김O규			
171	도량동	659-8	묘	13	13	경기 양주시 고읍동 77 티.에스 푸른솔1차아파트 106동 602호	김O규			
172	도량동	659-16	도	7	4	도로과	구미시			
173	도량동	660	전	235	235	구미시 검성로 115, 302동 102호(황상동, 주공아파트)	엄O식	구미시 광평동 558-4	최O묘	근저당권 설정
						구미시 백산로5길 26, A동 104호 (송정동, 벨라아파트)	최O현			

번호	위치 구미시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동	지번		공부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74	도량동	661	도	225	225	도로과	구미시			
175	도량동	691	전	1,786	1,155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44번길 50, 104동 1303호(두왕동, 호반베르디움1단지)	길O광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271번길 15, 102호(신정동, 강남번영빌라)	길O순			
176	도량동	691-2	전	265	265		구미시			
177	도량동	693	전	1,242	706	구미시 남통동 금오청구아파트 102동 1302호 회장 김정득	경주O씨구O 공파종친회			
178	도량동	693-1	전	302	302	구미시 남통동 금오청구아파트 102동 1302호 회장 김정득	경주O씨구O 공파종친회			
179	도량동	694-3	전	1,213	773	구미시 원평동 158	조O동			
180	도량동	695	임	376	376		김O용			
181	도량동	695-1	임	417	417		김O용			
182	도량동	695-2	임	195	195		김O용			
183	도량동	696	전	1,724	1,724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로 5, 202동 809호(지산동, 지산리더스)	이O중			
						구미시 비산동 368 벽산아파트 102동 306호	이O인			
						구미시 도량동 610-3	이O해			

번호	위치 구미시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동	지번		공부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84	도량동	696-1	전	580	580	구미시 도량동 610-3	이O해			
						구미시 비산동 368 벽산아파트 102동 306호	이O인			
							구미시			
185	도량동	697-1	전	317	317		경상북도(교육감)			
186	도량동	698-1	전	145	145		구미시			
187	도량동	698-2	도	252	25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88, c동 2107호(서초동, 아크로비스타)	박O배			
188	도량동	698-3	전	567	567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88, c동 2107호(서초동, 아크로비스타)	박O배			
189	도량동	698-6	도	116	116		구미시			
190	도량동	698-7	도	117	117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88, c동 2107호(서초동, 아크로비스타)	박O배			
191	도량동	698-8	전	219	219		구미시			
192	도량동	698-9	전	173	17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88, c동 2107호(서초동, 아크로비스타)	박O배			
193	도량동	699-2	도	23	2	부산시 강서구 녹산동 5-71	김O옥			

번호	위치 구미시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동	지 번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94	도량동	699-6	전	110	110	경상북도 구미시 박정희로 599, 118동 1504호 (송정동,푸르지오 캐슬에이단지)	장O수			
195	도량동	792-279	천	1,447	1,447		국(건설부)			
196	도량동	792-281	천	442	442		국(건설부)			
197	도량동	792-333	천	56	56		국(건설부)			
198	도량동	792-287	천	6,408	14		국(건설부)			
199	도량동	792-293	천	361	361		국(건설부)			
200	도량동	798	도	469	469		국(건설부)			
201	도량동	799	구	550	547		국(농림축산식품부)			
202	도량동	799-3	구	245	65		국(농림축산식품부)			
203	도량동	800	도	31	31		국(건설부)			
204	도량동	800-2	도	12	12		국(건설부)			
205	도량동	805	구	382	130		국(농림축산식품부)			
206	도량동	808	구	718	718		국(농림축산식품부)			
207	도량동	810	구	689	368		구미시			
208	도량동	813	구	997	658		국(농림축산식품부)			
209	도량동	813-4	구	240	137		국(농림축산식품부)			

번호	위치 구미시 동	위치 구미시 지번	지목	면적(㎡) 공부	면적(㎡) 편입	소유자 주소	소유자 성명	관계인 주소	관계인 성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10	도량동	816-3	구	1,887	1,849		국(농림축산식품부)			
211	도량동	816-5	구	3,950	3,950		국(농림축산식품부)			
212	도량동	816-9	구	79	79		국(농림축산식품부)			
213	도량동	816-11	구	552	552		국(농림축산식품부)			
214	도량동	816-12	구	835	835		국(농림축산식품부)			
215	도량동	816-39	구	202	202		국(농림축산식품부)			
216	도량동	816-27	구	12	12		구미시			
217	원호리	103	건물	100.70	100.70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103	김O분			
218	원호리	416		89.10	89.10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416 (대구달서구월성동84 월성주공아파트106-403 대표이등현)	성산O씨정O공파종중			
219	도량동	산24		70.08	70.08	구미시 개화2길 25, (도량동)	최O모			
220	도량동	539		130.75	130.75	경북 구미시 문장로7길 28 (도량동)	정O자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 (을지로2가) 강일지점	주식회사 국O은O	

번호	위치 구미시 동	위치 구미시 지번	지목	면적(㎡) 공부	면적(㎡) 편입	소유자 주소	소유자 성명	관계인 주소	관계인 성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건물			경북 구미시 문장로7길 28 (도량동)	정O자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문성로 30, 110동 2301호 문성 서희스타힐스	한O준	
221	도량동	552-2		198.46	198.46	경상북도 구미시 문장로7길 6-27 (도량동)	김O옥			
222	도량동	611-10		78.37	78.37	경상북도 구미시 문장로9길 20-3 (도량동)	김O정	경상북도 구미시 송동로 68-15 (도량동)	도량 새마을금고	
						경상북도 구미시 문장로9길 20-3 (도량동)	김O욱			
223	도량동	611-7		88.58	88.58	구미시 문장로 9길 22-1 (도량동 611-7)	이O용			
224	도량동	611-1		76.875	76.875	경상북도 구미시 도량동 611-1	최O순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동 146-6 파머스마켓지점	구미O업 협O조합	
225	도량동	611-11		84.35	84.3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165번길 35, 509-302 수내동 양지마을	김O성			

영천시 고시 제2021 - 2호

영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영천시 고경면 청정리 631번지 일원에 호국기념관 조성사업을 위한 영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4일

영 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영천시 고경면 청정리 631번지 일원(변경 없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가. 사업의 종류 : 영천시 도시계획시설사업

나. 명 칭 : 영천 호국기념관 조성사업

3. 면적 또는 규모(변경 없음)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 : 문화시설 A= 27,957㎡

나. 사업 시행면적 : A= 27,957㎡

- 건 축 면 적 : 1,795㎡

- 건축 연면적 : 2,518㎡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가. 성 명 : 영천시장

나. 주 소 : 영천시 시청로 16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초 : 인가일 ~ 2020. 12. 31.

- 변경 : 인가일 ~ 2021.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 없음)

7. 법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사항(해당없음)

8. 관계도서는 영천시청 도시계획과(054-330-634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끝.

영천시 고시 제2021 - 3호

영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영천시 완산동 그린환경센터 내 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변경)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4일

영 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영천시 완산동 산3-1번지 일원(변경 없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가. 사업의 종류 : 영천시 도시계획시설사업

나. 명 칭 : 영천시 그린환경센터 생활자원회수센터 개선사업

3. 면적 또는 규모(변경 없음)

1)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 : A= 75,502㎡

2) 사업 시행면적 : A= 3,970㎡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1) 성 명 : 영천시장

2) 주 소 : 영천시 시청로 16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1) 당초 : 인가일 ~ 2020. 12. 31.

2) 변경 : 인가일 ~ 2022.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주소

7. 법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사항(해당없음)

8. 관계도서는 영천시청 도시계획과(054-330-634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끝.

의성군 고시 제2021 - 2호

의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 678-2번지 일원 『의성읍 복합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4일

의 성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의성읍 복합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의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조서

가. 공간시설

1)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7	후죽공원	소공원	의성읍 후죽리 678-2번지 일원	850	감) 850	-	경고 제201호 (84.11.2)	

■ 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7	후죽공원	· 소공원 폐지 - A = 850㎡	· 의 성 읍 의 역 사 · 문 화 공 간 을 복원하여 역사인물선양사업과 주민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군계획시설(소공원)을 폐지하고자 함

3.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이해관계인은 의성군청 도시환경국 지역재생과(054-830-6343)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의성군 고시 제2021-3호

의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의성군 의성읍 원당리 208-1번지 일원 『마늘테마파크 내 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제32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4일

의 성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변경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변경으로써 의성 마늘테마파크의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조서

가.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1) 공간시설

가)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①	의성마늘 테마파크	문화 공원	의성읍 원당리 208-1번지 일원	17,313	감) 44	17,269	경상북도고시 제2010-446호 (2010.10.07)	

■ 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의성마늘 테마파크	· 문화공원 면적 변경 - A = 17,313㎡ → 17,269㎡ (감 44㎡)	· 지적합필에 따른 면적 변경

나.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1) 시설총괄표

시설 구분		시설내용	부지규모				건축규모						비고
			면적(㎡)			구성비 (%)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총 계			17,313	17,269	감) 44	100.0	845.73	917.73	증) 72.0	1,188.51	1,260.51	증) 72.0	
공원시설	소 계		6,396	6,396	-	37.0	845.73	917.73	증) 72.0	1,188.51	1,260.51	증) 72.0	
	도로 및 광장	- 도로 - 중앙광장 - 휴게광장	3,129	3,129	-	18.1	-	-	-	-	-	-	
	조경시설	- 계류 - 마늘조형입수구 - 전망데크 - 관찰데크 - 바닥분수 - 허브가든 - 발맛사지길	890	890	-	5.1	-	-	-	-	-	-	
	휴양시설	- 반원형파고라 - 포켓쉼터 - 육각휴게파고라	135	135	-	0.8	-	-	-	-	-	-	
	운동시설	- 가족건강마당	348	348	-	2.0	-	-	-	-	-	-	
	교양시설	- 야외공연장	378	378	-	2.2	-	72.0	증)72.0	-	72.0	증)72.0	
		- 전시동	634	-	감) 634	-	576.45	-	감)576.45	919.23	-	감)919.23	전시동 폐지
	편익시설	- 주차장	497	497	-	2.9	-	-	-	-	-	-	
		- 커뮤니티센터	-	634	증) 634	3.7	-	576.45	증)576.45	-	919.23	증)919.23	커뮤니티 센터신설
	관리시설	- 판매동 - 화장실	385	385	-	2.2	218.98	218.98	-	218.98	218.98	-	판매동
							50.30	50.30	-	50.30	50.30	-	화장실
녹 지			10,917	10,873	감) 44	63.0	-	-	-	-	-	-	

2) 세부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건축규모(㎡)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총 계					17,313	17,269	감) 44	845.73	917.73	증) 72	1,188.51	1,260.51	증) 72	
도로 및 광장	소 계				3,129	3,129	-	-	-	-	-	-	-	
	기정		도 로		505	505	-	-	-	-	-	-	-	
	기정	1-1	중앙광장	원당리 208-1번지 일원	2,383	2,383	-	-	-	-	-	-	-	
	기정	1-2	휴계광장	원당리 208-1번지 일원	241	241	-	-	-	-	-	-	-	
조경시설	소 계				890	890	-	-	-	-	-	-	-	
	기정	2-1	계류	원당리 208-1번지 일원	486	486	-	-	-	-	-	-	-	
	기정	2-2	마늘조형 입수구	원당리 208-1번지 일원	28	28	-	-	-	-	-	-	-	
	기정	2-3	전망데크	원당리 208-1번지 일원	38	38	-	-	-	-	-	-	-	
	기정	2-4	관찰데크	원당리 208-1번지 일원	43	43	-	-	-	-	-	-	-	
	기정	2-5	바닥분수	원당리 208-1번지 일원	119	119	-	-	-	-	-	-	-	
	기정	2-6	허브가든	원당리 208-1번지 일원	100	100	-	-	-	-	-	-	-	
	기정	2-7	발맛사지길	원당리 208-1번지 일원	76	76	-	-	-	-	-	-	-	
휴양시설	소 계				135	135	-	-	-	-	-	-	-	
	기정	3-1	반원형 파고라1	원당리 208-1번지 일원	46	46	-	-	-	-	-	-	-	
	기정	3-2	반원형 파고라2	원당리 208-1번지 일원	44	44	-	-	-	-	-	-	-	
	기정	3-3	포켓쉼터1	원당리 208-1번지 일원	6	6	-	-	-	-	-	-	-	
	기정	3-4	포켓쉼터2	원당리 208-1번지 일원	7	7	-	-	-	-	-	-	-	
	기정	3-5	포켓쉼터3	원당리 208-1번지 일원	12	12	-	-	-	-	-	-	-	
	기정	3-6	육각휴게 파고라	원당리 208-1번지 일원	20	20	-	-	-	-	-	-	-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건축규모(㎡)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운동시설	소 계				348	348	-	-	-	-	-	-	-	
	기정	4-1	가족 건강마당	원당리 208-1번지 일원	348	348	-	-	-	-	-	-	-	
교양시설	소 계				1,012	378	감) 634	576.45	72.0	감) 504.45	919.23	72.0	감) 847.23	
	변경	5-1	야외 공연장	원당리 208-1번지 일원	378	378	-	-	72.0	증) 72.0	-	72.0	증) 72.0	
	폐지	5-2	전시동	원당리 208-1번지 일원	634	-	감) 634	576.45	-	감) 576.45	919.23	-	감) 919.23	지하1층 지상1,2층
편익시설	소 계				497	1,131	증) 634	-	576.45	증) 576.45	-	919.23	증) 919.23	
	기정	6-1	주차장	원당리 208-1번지 일원	497	497	-	-	-	-	-	-	-	
	신설	6-2	커뮤니티 센터	원당리 208-1번지 일원	-	634	증) 634	-	576.45	증) 576.45	-	919.23	증) 919.23	지하1층 지상1,2층
관리시설	소 계				385	385	-	269.28	269.28	-	269.28	269.28	-	
	기정	7-1	판매동	원당리 208-1번지 일원	272	272	-	218.98	218.98	-	218.98	218.98	-	지상 1층
	기정	7-2	화장실	원당리 208-1번지 일원	113	113	-	50.3	50.3	-	50.3	50.3	-	지상 1층
녹지	소 계				10,917	10,873	감) 44	-	-	-	-	-	-	
	변경		녹지	원당리 208-1번지 일원	10,917	10,873	감) 44	-	-	-	-	-	-	

3)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 계		8개		1.2~2.3	408	505				
기정	세로	-	1	1.2	161	193	간선동선	원당리 208-1번지	원당리 208-1번지	산책로
기정	세로	-	2	1.2	26	31	시설연결 동선	원당리 208-1번지	원당리 208-1번지	시설 연결로
기정	세로	-	3	1.2	15	18	시설연결 동선	원당리 208-1번지	원당리 208-1번지	시설 연결로
기정	세로	-	4	1.2	8	10	시설연결 동선	원당리 208-1번지	원당리 208-1번지	시설 연결로
기정	세로	-	5	2.3	4	9	시설연결 동선	원당리 208-1번지	원당리 208-1번지	시설 연결로
기정	세로	-	6	1.2	157	188	간선 동선	원당리 208-1번지	원당리 208-1번지	산책로
기정	세로	-	7	1.2	22	26	시설연결동선	원당리 208-1번지	원당리 208-1번지	시설연결로
기정	세로	-	8	2.0	15	30	진입동선	원당리 208-1번지	원당리 208-1번지	진입로

3.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이해관계인은 의성군청 지역재생과(054-830-6369)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에 따라 본 결정고시로 갈음하며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함.

◈◈◈

구미시 공고 제 2021 – 5호

공인 등록 및 폐인 공고

구미시 공인조례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 및 폐기한 공인을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4일

구 미 시 장

1. 사용연월일 : 2021. 1. 1.

2. 등 록 사 유 : 행정구역 개편

3. 공인명(인영)

구분	등록 공인		폐기 공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개 각	구미시 산동읍장인		구미시 산동면장인	
개 각	산동읍전용 구미시장인		산동면전용 구미시장인	
개 각	민원실전용 구미시산동읍장인		민원실전용 구미시산동면장인	
개 각	산동읍 재무관인		산동면 재무관인	
개 각	산동읍 지출원인		산동면 지출원인	

구분	등록 공인		폐기 공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개 각	산동읍 징수관인		산동면 징수관인	
개 각	산동읍 물품관리관인		산동면 물품관리관인	
개 각	산동읍 물품출납원인		산동면 물품출납원인	
개 각	산동읍 수입금출납원인		산동면 수입금출납원인	
개 각	산동읍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인		산동면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인	

구분	등록 공인		폐기 공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개 각	산동읍 일상경비출납원인		산동면 일상경비출납원인	
개 각	산동읍계인		산동면계인	
개 각	산동읍 민원실전용계인		산동면 민원실전용계인	
개 각	산동읍전용 구미시장인(인증기)		산동면전용 구미시장인(인증기)	
개 각	산동읍전용 구미시장인(인증기)		산동면전용 구미시장인(인증기)	

구분	등록 공인		폐기 공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개 각	민원실전용 구미시산동읍장인 (인증기)		민원실전용 구미시산동면장인 (인증기)	
개 각	민원실전용 구미시산동읍장인 (인증기)		민원실전용 구미시산동면장인 (인증기)	
신 조	산동읍 채권관리관인			
신 조	산동읍 분임물품출납원인			
개 각	구미시 공단동장인		구미시 공단2동장인	

구분	등록 공인		폐기 공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개 각	공단동전용 구미시장인		공단2동전용 구미시장인	
개 각	구미시공단동 재무관인		구미시공단2동 재무관인	
개 각	구미시공단동 지출원인		구미시공단2동 지출원인	
개 각	구미시공단동 물품관리관인		구미시공단2동 물품관리관인	
개 각	구미시공단동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인		구미시공단2동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인	

구분	등록 공인		폐기 공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개 각	구미시공단동 일상경비출납원인		구미시공단2동 일상경비출납원인	
개 각	구미시공단동 계인		구미시공단2동 계인	
개 각	민원실전용 구미시공단동장인 (인증기)		민원실전용 구미시공단2동장인 (인증기)	
신 조	구미시공단동 징수관인			
신 조	구미시공단동 채권관리관인			

구분	등록 공인		폐기 공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신 조	구미시공단동 물품출납원인			
신 조	구미시공단동 수입금출납원인			
폐 인			구미시공단2동 분임불품출납원인	
폐 인			구미시공단2동 분임수입금출납원인	
폐 인			구미시 공단1동장인	

구분	등록 공인		폐기 공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폐 인			공단1동전용 구미시장인	
폐 인			구미시공단1동 계인	
폐 인			민원실전용 구미시공단1동장인 (인증기)	
폐 인			공단1동전용 구미시장인(인증기)	
폐 인			구미시공단1동 재무관인	

구분	등록 공인		폐기 공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폐 인			구미시공단1동 물품관리관인	
폐 인			구미시공단1동 분임물품출납원인	
폐 인			구미시공단1동 지출원인	
폐 인			구미시공단1동 일상경비출납원인	
폐 인			구미시공단1동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인	

구분	등록 공인		폐기 공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폐 인			구미시공단1동 분임수입금출납원인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 – 65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4일

부 산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장

하천의 명칭	반변천(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안동시장(공원녹지과장)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명륜동)
점용위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동 1517-113번지 일원 면적 : 9,649㎡
점용목적 및 시설개요	점용목적 : 낙천공원 조성 시설개요 : ㅇ 사각정자 1개소, 사각파고라 2개소, 평의자 16개소, 조형물 1개소, 그네 1개소, 통나무 터널 2개소, 투수골재포장 986㎡, 마사토포장 1,011㎡ 등 ㅇ 느티나무 외 3종 37주, 장미 외 8종 14,180주, 작약 외 2종 13,415 잔디 3,726㎡
점용 기간	2020년 12월 30부터 2025년 06월 30일까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65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4일

부 산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장

하천의 명칭	낙동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안동시장(도시재생과장)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명륜동)
점용위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태화동 841번지 외 15필지 일원 면적 : 47,589㎡
점용목적 및 시설개요	점용목적 : 경관초화단지 조성 시설개요 : ㅇ 집수정(400×400×H1,000) 6개소, 우수관(PE이중벽유공관, D300, 335m) ㅇ 원주목경계(D150×H200, 485m), 황토포장(T100, 습식, 3,255㎡) ㅇ 종합안내판(2,000×1,500) 1개소, 시설안내판(120×1,800) 5개소 ㅇ 식재 – A구역(10,248㎡) : 억새 등 4종(256,200본) – B구역(2,419㎡) : 사철나무(교목) 1종(2,160주), 작약 등 2종(50,350본) – C구역(10,782㎡) : 가우라 등 2종(256,200본) ㅇ 관수시설 – 관수배관(D50, 775m), 관수배관(D50, 775m) – 펌프함(1,500×1,000×H800) 1개소, 밸브박스(1,500×1,000×H1,000) 1개소 ㅇ 전기시설 – 전기배선(D80, 227m), 전기맨홀(1,000×1,000) 3개소 – 제어함(600×250×H1400) 1면 ㅇ 원주목경계(D150×H200) 485m, 황토포장(T100, 습식) 3,594㎡ ㅇ 기존시설(4대강 조성) – 수목 : 소나무 25주 – 자전거도로, 보행로 (B6.25) 110m, (B4.3~5.0) 341m, (B2.3) 887m ㅇ 가설사무실(3×6×2.6, 컨테이너) 2동(일시점용), 36㎡
점용 기간	2020년 12월 30부터 2025년 06월 30일까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 - 655호

하천점용(일시)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일시)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4일

부 산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장

하천의 명칭	낙동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장(공간디자인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점용위치 및 면적	위 치 : 경상북도 안동시 법흥동 6-3번지, 성곡동 1438-1번지 일원 면 적 : 60㎡
점용목적 및 시설개요	점용목적 : 안동댐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지반조사 시설개요 : 지반조사 2공
점용 기간	2020년 12월 30일부터 2021년 02월 28일까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656호

하천점용(일시)허가 기간연장 고시문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일시)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4일

부 산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장

하천의 명칭	낙동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고령지사장 주 소 :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가야금길 3
점용위치 및 면적	위 치 :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객기리 612번지 외 2필지 일원 면 적 : 9,309㎡
점용목적 및 시설개요	점용목적 : 흡입수조 및 송수관로 설치 시설개요 : 하상준설(토사) : L=525m, V=12,405㎥ 흡입수조(3.0m×3.0m×6.4m) : 1개소 콘크리트포장 : A=7.2㎡(1.2m×6.0m) 송수관로(PE피복강관 D400) : L=181.8m 오탁방지막 : L=30m, 마대쌓기 : A=276㎡(L46m× H6.0m)
점용 기간	당 초 :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변 경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661호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이를 고시 합니다.

2021년 1월 4일

부 산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장

하천의 명칭	감천(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장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들성로13길 14
점용위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원리 1057-2번지 일원 면적 : 108㎡
점용목적 및 시설개요	점용목적 : 오로배수장 토출구조체 설치 시설개요 : 오로배수장 토출구조체 1식
점용 기간	당초 : 2016년 02월 26일부터 2021년 02월 25일까지 변경 : 2021년 02월 26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662호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이를 고시 합니다

2021년 1월 4일

부 산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장

하천의 명칭	감천(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한국전력공사 김천지사장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모암길 210(성내동20)
점용위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의리 1777-104번지 외 2 필지 일원 면적 : 0.69㎡
점용목적 및 시설개요	점용목적 : 전력공급용 한전주 설치 시설개요 : 한전주 6본
점용 기간	당초 : 2015년 12월31일부터 2020년 12월 30일까지 **변경 : 2020년 12월31일부터 2025년 06월 30일까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 - 663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4일

부 산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장

하천의 명칭	낙동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 명 : 안동시장(문화유산과장) 주 소 :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명륜동)
점용위치 및 면적	위 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병산리 519-1번지 일원 면 적 : 31.5㎡
점용목적 및 시설개요	점용목적 : 병산서원 주차장 설치에 따른 배수로 설치 시설개요 : U형측구 설치 L= 25.0m(0.6x1.0m), 횡배수관 설치 L= 9m(D800mm)
점용 기간	2018년 06월 25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1 - 1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공인 공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조직개편(2021. 1. 1)에 따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공인 규정」 제10조에 의거 신조 및 폐기공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4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1. 공인신조 · 폐기 사유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조직개편

2. 공인사용 · 폐기 개시일 : 2021. 1. 1

3. 신조 · 폐기 공인 내역 : 붙 임

붙 임 1. 신조 · 폐기공인 내역 각 1부.
2. 신조 · 폐기공인 인영부 각 1부. 끝.

[붙임1]

신 조 공 인

구 분	명 칭	규 격	사용 개시일	사 유
공인등록 (신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기획정책과분임재무관인	2.0㎝×2.0㎝	2021.1.1.	조직개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기획정책과물품출납운용관인	2.0㎝×2.0㎝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기획정책과분임물품출납원인	1.8㎝×1.8㎝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기획정책과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행정과분임징수관인	2.0㎝×2.0㎝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행정과분임재무관인	2.0㎝×2.0㎝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행정과물품운용관인	2.0㎝×2.0㎝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행정과분임물품출납원인	1.8㎝×1.8㎝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행정과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혁신유치정책과분임재무관인	2.0㎝×2.0㎝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혁신유치정책과물품출납운용관인	2.0㎝×2.0㎝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혁신유치정책과분임물품출납원인	1.8㎝×1.8㎝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혁신유치정책과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홍보과분임재무관인	2.0㎝×2.0㎝		

구 분	명 칭	규 격	사용 개시일	사 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홍보과물품출납운용관인	2.0㎝×2.0㎝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홍보과분임물품출납원인	1.8㎝×1.8㎝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홍보과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기업지원1과분임재무관인	2.0㎝×2.0㎝	2021.1.1.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기업지원1과물품출납운용관인	2.0㎝×2.0㎝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기업지원1과분임물품출납원인	1.8㎝×1.8㎝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기업지원1과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유치1과분임재무관인	2.0㎝×2.0㎝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유치1과물품출납운용관인	2.0㎝×2.0㎝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유치1과분임물품출납원인	1.8㎝×1.8㎝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유치1과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지구개발1과분임재무관인	2.0㎝×2.0㎝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지구개발1과물품출납운용관인	2.0㎝×2.0㎝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지구개발1과분임물품출납원인	1.8㎝×1.8㎝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지구개발1과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기업지원2과분임재무관인	2.0㎝×2.0㎝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기업지원2과물품출납운용관인	2.0㎝×2.0㎝		

구 분	명 칭	규 격	사용 개시일	사 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기업지원2과분임물품출납원인	1.8㎝×1.8㎝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기업지원2과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유치2과분임재무관인	2.0㎝×2.0㎝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유치2과물품출납운용관인	2.0㎝×2.0㎝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유치2과분임물품출납원인	1.8㎝×1.8㎝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유치2과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지구개발2과분임재무관인	2.0㎝×2.0㎝	2021.1.1.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지구개발2과물품출납운용관인	2.0㎝×2.0㎝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지구개발2과분임물품출납원인	1.8㎝×1.8㎝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지구개발2과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지구개발3과물품출납운용관인	2.0㎝×2.0㎝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지구개발3과물품출납운용관인	2.0㎝×2.0㎝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지구개발3과분임물품출납원인	1.8㎝×1.8㎝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지구개발3과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계		45개	

폐 기 공 인

구 분	명 칭	규 격	폐기일	사 유
공인등록 (폐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기획예산과분임재무관인	2.0㎝×2.0㎝	2021.1.1	조직개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기획예산과물품출납운용관인	2.0㎝×2.0㎝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기획예산과분임물품출납원인	1.8㎝×1.8㎝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기획예산과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행정지원과분임징수관인	2.0㎝×2.0㎝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행정지원과분임재무관인	2.0㎝×2.0㎝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행정지원과물품운용관인	2.0㎝×2.0㎝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행정지원과분임물품출납원인	1.8㎝×1.8㎝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행정지원과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유치전략과분임재무관인	2.0㎝×2.0㎝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유치전략과물품출납운용관인	2.0㎝×2.0㎝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유치전략과분임물품출납원인	1.8㎝×1.8㎝		

구 분	명 칭	규 격	폐기일	사 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유치전략과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홍보전략과분임재무관인	2.0㎝×2.0㎝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홍보전략과물품출납운용관인	2.0㎝×2.0㎝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홍보전략과분임물품출납원인	1.8㎝×1.8㎝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홍보전략과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미래산업과분임재무관인	2.0㎝×2.0㎝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미래산업과물품출납운용관인	2.0㎝×2.0㎝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미래산업과분임물품출납원인	1.8㎝×1.8㎝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미래산업과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유치지원과분임재무관인	2.0㎝×2.0㎝	2021.1.1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유치지원과물품출납운용관인	2.0㎝×2.0㎝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유치지원과분임물품출납원인	1.8㎝×1.8㎝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유치지원과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기업지원과분임재무관인	2.0㎝×2.0㎝		

구 분	명 칭	규 격	폐기일	사 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기업지원과물품출납운용관인	2.0㎝×2.0㎝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기업지원과분임물품출납원인	1.8㎝×1.8㎝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기업지원과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수성테크노폴리스개발과분임 재무관인	2.0㎝×2.0㎝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수성테크노폴리스개발과물품출납 운용관인	2.0㎝×2.0㎝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수성테크노폴리스개발과분임물품 출납원인	1.8㎝×1.8㎝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수성테크노폴리스개발과일상경비 출납원인	1.8㎝×1.8㎝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융합하이테크지구개발과분임 재무관인	2.0㎝×2.0㎝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융합하이테크지구개발과물품 출납운용관인	2.0㎝×2.0㎝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융합하이테크지구개발과분임 물품출납원인	1.8㎝×1.8㎝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융합하이테크지구개발과일 상경비출납원인	1.8㎝×1.8㎝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지식산업지구개발과분임 재무관인	2.0㎝×2.0㎝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지식산업지구개발과물품출납 운용관인	2.0㎝×2.0㎝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지식산업지구개발과분임물품 출납원인	1.8㎝×1.8㎝		

구 분	명 칭	규 격	폐기일	사 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지식산업지구개발과일상경비 출납원인	1.8㎝×1.8㎝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첨단융합유치과분임재무관인	2.0㎝×2.0㎝	2021.1.1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첨단융합유치과물품출납운용관인	2.0㎝×2.0㎝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첨단융합유치과분임물품출납원인	1.8㎝×1.8㎝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첨단융합유치과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지식하이테크유치과분임재무관인	2.0㎝×2.0㎝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지식하이테크유치과물품출납 운용관인	2.0㎝×2.0㎝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지식하이테크유치과분임물품 출납원인	1.8㎝×1.8㎝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지식하이테크유치과일상경비 출납원인	1.8㎝×1.8㎝		
	계		49개	

[붙임2]

신 조 공 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기획정책과분임재무관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기획 정책과물품출납운용관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기획 정책과분임물품출납원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기획 정책과일상경비출납원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행정과분임징수관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행정과분임재무관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행정과물품운용관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행정과분임물품출납원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행정과일상경비출납원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혁신유치정책과분임재무관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혁신유치정책과물품출납운용관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혁신유치정책과분임물품출납원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혁신유치 정책과일상경비출납원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홍보과분임재무관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홍보과물품출납운용관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홍보과분임물품출납원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홍보과일상경비출납원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기업지원1과분임재무관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기업지원 1과물품출납운용관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기업 지원1과분임물품출납원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기업지원1과일상경비출납원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유치1과분임재무관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유치1과물품출납운용관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유치 1과분임물품출납원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유치1과일상경비출납원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지구개발1과분임재무관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지구 개발1과물품출납운용관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지구개발 1과분임물품출납원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지구개발1과일상경비출납원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기업지원2과분임재무관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기업 지원2과물품출납운용관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기업지원 2과분임물품출납원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기업지원2과일상경비출납원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유치2과분임재무관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유치2과물품출납운용관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유치2과 분임물품출납원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유치2과일상경비출납원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지구개발2과분임재무관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지구 개발2과물품출납운용관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지구개발 2과분임물품출납원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지구개발2과일상경비출납원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지구개발3과분임재무관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청지구개발3과물품출납운용관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지구개발 3과분임물품출납원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지구개발3과일상경비출납원인			
			

폐 기 공 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기획예산과분임재무관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기획예산과물품출납운용관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기획예산과분임물품출납원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기획예산과일상경비출납원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행정지원과분임징수관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행정지원과분임재무관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행정지원과물품운용관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행정지원과분임물품출납원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행정 지원과일상경비출납원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유치전략과분임재무관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유치전략과물품출납운용관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유치 전략과분임물품출납원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유치전략과일상경비출납원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홍보전략과분임재무관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홍보전략과물품출납운용관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홍보전략과분임물품출납원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홍보전략과일상경비출납원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미래산업과분임재무관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미래산업과물품출납운용관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미래산업과분임물품출납원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미래산업과일상경비출납원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유치지원과분임재무관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유치 지원과물품출납운용관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유치 지원과분임물품출납원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유치지원과일상경비출납원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기업지원과분임재무관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기업 지원과물품출납운용관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기업 지원과분임물품출납원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기업지원과일상경비출납원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수성테크노 폴리스지구개발과분임재무관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수성테크노 폴리스지구개발과물품출납운용관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수성테크노 폴리스지구개발과분임물품출납원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수성테크노 폴리스지구개발과일상경비출납원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융합하이 테크지구개발과분임재무관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융합하이 테크지구개발과물품출납운용관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융합하이 테크지구개발과분임물품출납원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융합 하이테크지구개발과일상경비출납원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지식 산업지구개발과분임재무관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지식 산업지구개발과물품출납운용관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지식 산업지구개발과분임물품출납원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지식산업지구개발과일상경비출납원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첨단융합유치과분임재무관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첨단융합유치과물품출납운용관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첨단융합유치과분임물품출납원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첨단융합유치과일상경비출납원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지식하이 테크유치과분임재무관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지식하이 테크유치과물품출납운용관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지식하이 테크유치과분임물품출납원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지식하이 테크유치과일상경비출납원인			
			

새바람 행복 경북!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이름 청렴韓세상